

군산시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10년 10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 270호

군산시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군산시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법률 제9675호 및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산시 방위지원본부 및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군산시방위지원본부 및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편성, 전·평시 작전지원 계획을 확립하는데 있다.

제3조(설치)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안에 군산시 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한다.

제4조(설치) ① 방위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방위지원 본부는 방위지원본부(장), 종합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시청 종합상황실안에 설치할 수 있고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작전과장, 경비과장이 되고 반원은 군·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한다.

④ 종합상황실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반원 및 분야별 지원반의 대표로 구성한다.

⑤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한다.

⑥ 각 지원반은 기능별 기능조로 편성한다.

1. 총괄지원반

- 반 장 : 재난관리과장
- 회의주재조 : 조장 - 총무계장
- 상황처리조 : 조장 - 기획계장
- 업무통제조 : 조장 - 기록관리계장

2.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 반 장 : 기획예산과장
- 인력동원조 : 조장 - 민방위계장
- 병력동원조 : 조장 - 민방위계장
- 재정지원조 : 조장 - 예산계장

3.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 반 장 : 지역경제과장
- 산업동원조 : 조장 - 지역경제계장
- 산업시설복구조 : 조장 - 산단관리계장
- 동력자원복구조 : 조장 - 에너지계장
- 차량동원조 : 조장 - 교통기획계장
- 건설기계동원 및 도로복구조 : 조장 - 도로관리계장

4. 의료·구호지원반

- 반 장 : 복지지원과장
- 보사동원조 : 조장 - 보건행정계장
- 구 호 조 : 조장 - 기초생활계장

5. 보급·급식지원반

- 반 장 : 농산물유통과장
- 보 급 조 : 조장 - 양정계장
- 급 식 조 : 조장 - 경로복지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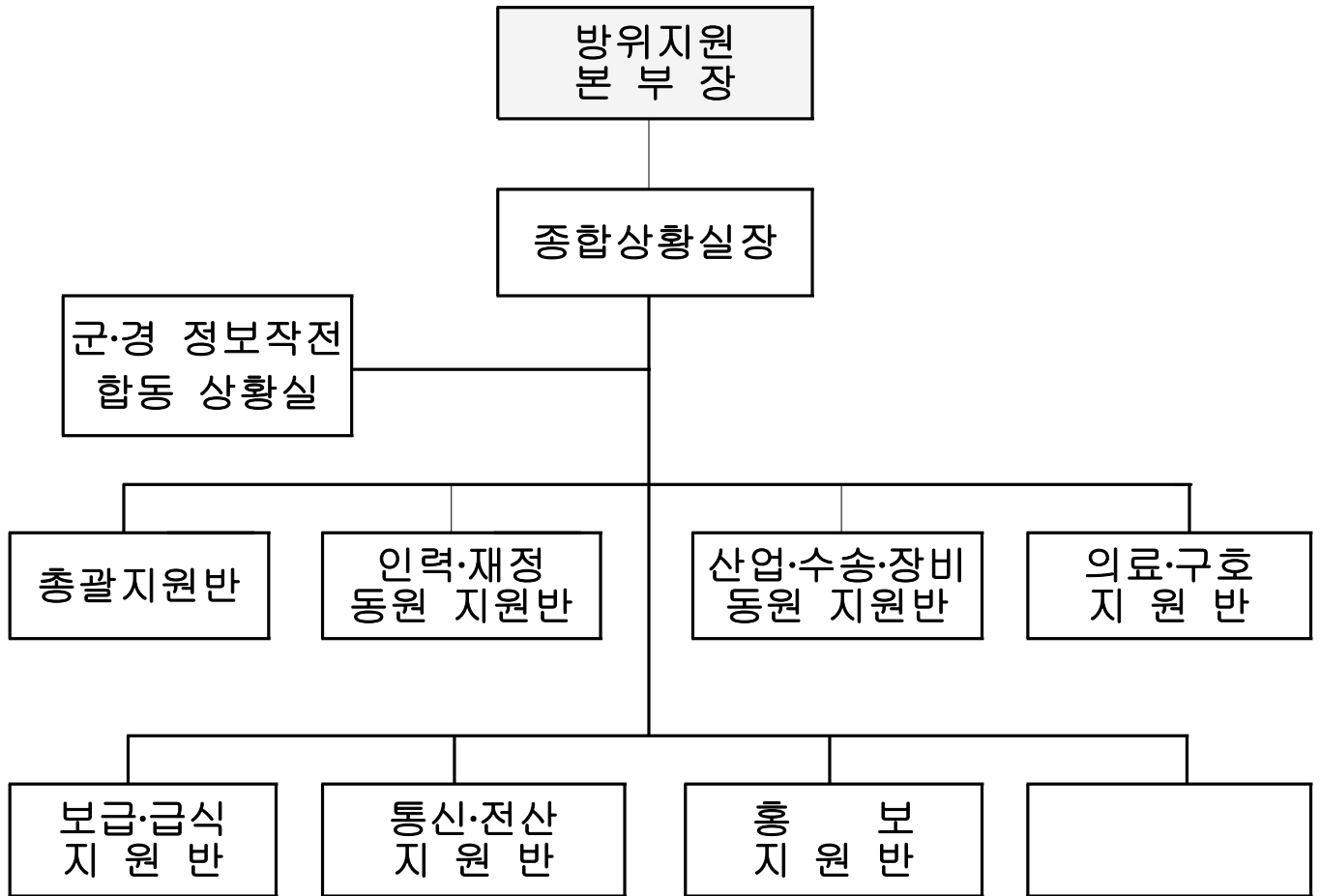
6. 통신·전산지원반

- 반 장 : 정보통신담당관
- 통 신 조 : 조장 - 정보통신계장
- 전 산 조 : 조장 - 정보기획계장
- 복 구 조 : 조장 - 특별기동팀장(한국통신공사)

7. 홍보지원반

- 반 장 : 공보담당관
- 홍 보 조 : 조장 - 홍보계장
- 주민계몽조 : 조장 - 공보계장

제5조(편성)



제6조(임무 및 기능) ①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 ② 국가동원(인력, 병력, 산업, 물자, 건설, 운송)의 조정통제 협조
- ③ 민방위사태 지원(피해복구)
- ④ 예비군 육성 지원

제7조(각반의 임무) ① 방위지원본부장

1. 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2.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3.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를 유지
4. 군·경 정보작전 활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② 종합지원상황실(장)

1. 본부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2.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3.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 및 조정·통제

4. 예하 관서 통합방위지원상황실 지휘·감독

③ 총괄지원반(장)

1.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2. 정기 또는 수시로 운용되는 각종 회의 관장

④ 인력·재정 동원지원반(장)

1.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계획 수립하고 집행대행
2. 예비군,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유지 조정
3.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제기
4. 주민통제 업무를 관장
5.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지원업무관장
6.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준비
7. 지원본부 요원 예산결산

⑤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장)

1. 산업, 건설, 장비, 수송 지원계획 수립 및 소요판단 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2.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3. 건설 및 수송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4.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 기술인력 확보 피해복구 업무 관장
5. 차량통제

⑥ 의료·구호지원반(장)

1.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2.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3. 급수 및 방역 업무
4.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5.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시행

⑦ 통신·전산 지원반(장)

1. 통신, 전산 지원계획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2.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3.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4. 통신시설 가설 복구
5. 통신, 전산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

⑧ 보급·급식 지원반(장)

1. 보급 및 급식지원 계획 수립·시행
2. 작전동원 병력 급식 및 보급 지원
3.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지원
4.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자 동원집행 준비

⑨ 홍보지원반(장)

1. 홍보 및 계몽계획을 연중 지속적 수립·시행
2.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3.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4.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제8조(운용) ① 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소집을 의결하였을 시 또는 합동훈련시 소집한다.

②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원본부장이 별도 조정 결정한다.

제9조(각반의 세부업무)

① 총괄지원반

1. 지원반의 상황처리 취합
2. 상황처리 현황보고
3. 상황판 기록유지 관리

②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1. 인력, 병력동원 세부집행 계획유지
2. 동원지정 및 신상 변동자의 행정조치
3. 인력, 동원 업무의 통제조정
4. 보충대의 인도관 파견계획 작성 및 파견
6. 전시예산규모계획 수립 및 시행
7. 지원대책 강구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 운영

③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1. 산업, 수송 및 건설동원 세부집행 계획 유지
2. 건설, 복구, 운송조 편성유지
3. 건설동원 중장비 및 시설, 토지, 정비업체 동원 소요 지정 및 변동자원 파악 조치
4. 동원 지정 품목 소요량 확보 및 관리
5. 동원 지정 생산업체 지도 감독

④ 의료·구호지원반

1. 작전지역에 구호반 운용계획(요원편성, 휴대장비 및 의료품) 수립시행
2. 후송대 편성 운용계획(요원편성, 구급차운용) 수립시행
3. 치료소 운용계획(가료병원지정, 능력, 규모) 수립시행
4. 기타 필요한 계획 준비시행

- ⑤ 통신·전산지원반
 - 1. 긴급복구 장비 및 자재 현황
 - 2. 비상 가설조 및 수리조 편성 운영
 - 3. 사태발생지역 통신수단 제공
 - 4. 기타 필요한 계획 수립 시행
- ⑥ 보급·급식지원반
 - 1. 식단편성(운반, 분배 고려) 시행
 - 2. 주·부식, 조달계획 수립시행
 - 3. 취사계획 수립시행
 - 4. 기타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 ⑦ 홍보지원반
 - 1. 홍보계획 수립시행
 - 2.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반 편성 운영
 - 3. 식별 및 신고요령 교육 계획 수립시행

제10조(각종지원기구 통합) ① 각종사태(적 침공 또는 민방위 사태)에 민, 관, 경, 군, 예비군, 사회단체가 공동 대처하고
 ② 지방행정 관서장의 상호지원 및 협조체제 단일화
 ③ 통합방위 작전에 관한 지원본부 확대로 각종 지원기구를 통합하여 지역단위 공동 방위체제를 확립한다.

- 동원지원위원회
- 방위지원위원회
- 인력동원위원회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 민방위협의회
- 통합방위협의회

- 통합방위협의회
(방위지원본부)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10년 10월 15일

군산시 훈령 제 271호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참고한다”를 “참고하여 해당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0호봉”을 “15호봉”으로 한다.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보수) ① (생략)</p> <p>②봉급액과 수당은 입단계약시 체결하고 재계약시는 매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비율을 <u>참고한다</u>.</p> <p>④선수단의 보수 및 호봉은 다음과 같다.</p> <p>1. 지도자와 선수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최고 호봉은 <u>10호봉</u>으로 하며 초임호봉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p> <p>2. · 3. (생략)</p> <p>⑤ ~ ⑦ (생략)</p>	<p>제10조(보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참고하여 해당</u> <u>년도 예산에 반영한다</u>.</p> <p>④ ----- -----.</p> <p>1. ----- ----- <u>15호봉</u> ----- -----.</p> <p>2. · 3. (현행과 같음)</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별표 4]

초임호봉 산정기준 (제10조4항 제1호와 관련)

비 교	구 분	코 치	트레이너	A 급	B 급	C 급
현 행	봉급기준	일반직 6급8호봉 기준	일반직 7급12호봉 기준	일반직 7급10호봉 기준	일반직 7급7호봉 기준	일반직 8급7호봉 기준
개정안	봉급기준	일반직 6급12호봉 기준	일반직 7급15호봉 기준	일반직 7급14호봉 기준	일반직 7급10호봉 기준	일반직 8급10호봉 기준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59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변경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명확한 표현 사용 (~내지 ⇒ ~부터 ~까지), 한자어의 한글
 화 등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
 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건축과(전화 : 063-450-4474, 팩스 063-452-882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주택관리계
 (전화 063-450-44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을 “「주택법」 제43조제8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 매년 다음연도”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85㎡이하인”을 “85㎡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1호”를 “별지 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인”을 각각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제5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택법」 제43조제8항----- ----- -----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제3조(종합계획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연도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수립)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연도-----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85㎡이하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한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 ----- ----- 85㎡이하 ----- ----- -----.

<p>② 공동주택 단지내 지원시설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가 종결된 다음 <u>각호</u>의 시설물로 한다.</p>	<p>② ----- ----- ---- <u>각 호</u>-----.</p>
<p>1. ~ 6. (생략)</p> <p>제5조(보조금 지원) 공동주택단지별 보조금은 예산 <u>범위</u> 안에서 3000만원 이하로 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5조(보조금 지원) ----- ----- <u>범위</u>----- -----.</p>
<p>제6조(지원사업 신청) ① (생략)</p> <p>②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u>별지1호</u> 서식의 공동주택지원사업신청서에 다음 <u>각호</u>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6조(지원사업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별지 1호</u> -- ----- -- <u>각 호</u>----- -----.</p>
<p>1.·2. (생략)</p> <p>③ (생략)</p>	<p>1.·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9인</u> 이내의 군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u>9명</u> ----- ----- -----.</p>
<p>② ~ ⑦ (생략)</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2. (생략)

제11조(보조금 지급) ① ~ ③ (생략)

④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⑧ -----
----- 범위 -----
----- . -----

----- .

제9조(위원회의 기능) -----
----- 각 호 -----
-----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조금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 .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절차법」 -----
-----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
----- 10명 -----
-----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자 2인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자 2인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4. 5. (생략)

④ ~ ⑦ (생략)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 의결한다.

1. 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2. (생략)

제16조(분쟁조정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2명

2. -----
----- 2명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4.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기능) -----
----- 각
호-----.

1.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2. (현행과 같음)

제16조(분쟁조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입주민(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2/10이상의 동의서. 단,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상대로 분쟁을 조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자체의결서로 대신한다

2.·3. (생략)

제18조(회의 및 의견청취)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항의 재적위원에서 제외한다.

1. ~ 4. (생략)

③·④ (생략)

1.-----

 ----- 1
 명-----

2.·3. (현행과 같음)

제18조(회의 및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 - 1560호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2010. 7.27일부터 2010.8.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0. 10. 14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연접개발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4.29)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09.11.16) 이후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 개정('10.4.29) 사항반영(제18조)

○ 당초

제18조 ②영 제55조 제5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등의 범위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와 같이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따르되 규모는 5,000㎡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같은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 변경

제18조 ② 영 제55조 제5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층수 등의 범위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14호부터 21호까지 해당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따르되, 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5,000㎡이상의 건축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나.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위락시설 설치시 거리제한 완화(별표7부터 별표10까지)

○ 당초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이내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 변경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다. 미관지구내 건축후퇴선 부분 행위 제한 완화

○ 당초

제42조제2항 2호를 삭제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군산시 건축조례』 및 『미관지구 건축선 지정고시』를 따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변경

제42조제2항 2호를 삭제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군산시 건축조례』를 따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의 견 제 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1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전화번호 063-450-4446, 팩스 063-452-8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윤석열(063-450-4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 10호 중 “규칙”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5조 제5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고

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층수 등의 범위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14호부터 21호까지 해당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따르되 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5,000㎡이상의 건축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타목 및 과목은 제외한다)

제42조제2항 2호를 삭제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군산시 건축조례』를 따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제2항중 “1년으로”를 “6개월로”로 한다.

별표 1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3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4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5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6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7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8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9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0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1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2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3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4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5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6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7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8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9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0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1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2 는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4 는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초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호 라목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중 같은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호 라목 및 바목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같은호 가목·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저장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별표 4” 하목의 공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저장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4” 하목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매매장 및 같은호 아목에 해당하는 차고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 “별표 4” 하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에 한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 쌓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공장으로 “별표 4” 하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에 한한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단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인접한 토지가 도로, 하천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다. 단, 숙박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은 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70미터 이상의 대지
 -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거리 산정시 도로, 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너비를 거리 산정시 산입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저장소(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시내버스 차고지에 한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과 폐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및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부화장과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사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같은호 사목 및 아목

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호 가목을 제외한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11호 가목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가목, 사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바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같은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9. 6.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중 같은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9. 6.23>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나목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5” 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호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과 도계장

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다목중 휴게음식점·제과점, 라목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파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 가목(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내지 자목, 카목, 타목(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 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 인 것과 시장이 1

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군산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참고한다.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별표 15” 카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 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취급소·액화가스판매소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수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목·라목 및 바목 내지 아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호 가목 및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호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같은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제30조제19호 관련)

1.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국가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는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3.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숙박시설을 제외한다)
4. 허용지역의 판단은 허용범위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촉여부를 판단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의 주무부서에서 판단 적용한다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잦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u>동법시행령</u> <u>(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이</u> <u>하“규칙”이라 한다) 및</u> ----- -----	제1조(목적) -----, <u>같은법 시행</u> <u>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u> <u>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u> -----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u>법</u> 제3조의 ----- -----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u>(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u> ----- ----- -----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u>영 제22조제2항</u> ----- ----- ----- ② (생략)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u> <u>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 2항</u>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1.~9.(생략) 10. <u>규칙</u> 제3조제2항 -----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1.~9.(생략) 10.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u>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u> <u>조제2항</u> -----

현행	개정안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생략) <u><신설></u></p>	<p>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현행과 같음) <u>② 영 제55조 제5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고자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층수 등의 범위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14호부터 2호까지 해당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따르되, 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5,000㎡이상의 건축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u>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3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차목 터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p>
<p>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생략)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p> <p>1. (생략) 2. 조경식수 3. (생략)</p>	<p>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군산시 건축조례」를 따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삭제 3. (현행과 같음)</p>
<p>제72조(회의록) ① (생략) ② 법 제1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은 1년으로 한다.</p>	<p>제72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과기간은 6개월로 한다.</p>

군산시 공고 제2010-1562호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 시행하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안 제9조)
- 다. 환지계획의 기준(안 제12조)
- 라. 공사비등 지불(안 제16조)
- 마. 토지평가협의회 기능(안 제29조)
- 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안 제30조)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공영사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전화 : 450-4448, FAX : 451-428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공영개발담당 (전화 450-44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1. 제정 이유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 시행하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2. 주요내용

가. 사업비용(안 제 8조) :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책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기타 잡수입

나.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안 제 9조)

1) 세입 :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잡수입금

2) 세출 : 사업수행에따른 공사비, 보상비, 용자금의 상환 및 기타

다. 토지등의 평가 (안 제 11조) : 사업시행전.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 가격의 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을 미장지구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

라. 환지계획의 기준(안 제 12조)

1) 환지계획은 평가식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

2) 환지의 위치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

3)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

4)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

5) 종전 토지의 지적이 협소하여 환지계획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

마. 공사비등 지불(안 제 16조)

1)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

2)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할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

바. 토지의 평가기준(안 제 22조) :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정리전.후의 평가는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

사. 토지평가협의회 기능(안 제 29조)

-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 3)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아.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안 제 30조)

- 1)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 가) 당해직 공무원 중 5명 이내의 공무원
 - 나)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 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 라) 당해 사업구역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법무계 사전 협의

라. 기 타

- 1) 제정안 : 붙임
- 2) 입법예고 : 2010. 10.15~ 11.4(20일)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장이 시행하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은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보류지, 기타 공동주택용지 등 토지이용계획 및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환지”란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로 환지하는 것을 말함.
5. “가상환지”란 금전청산 토지에 대한 교부금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상하여 환지위치 및 면적을 지정하는 것을 말 함.
6.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

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군산 미장동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사업의 시행

제5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이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장동.조촌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 면적은 법 제17조 따른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서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 사무소는 군산시청 내에 둔다.

제8조(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내에 미장지구 도

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용자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

③ 이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토지 등의 평가) ①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전·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군산 미장지구 토지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지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5.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7.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상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종전 토지의 지적이 협소하여 환지계획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 ③ 법 제31조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준공전 사용허가 등 환지예정지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면적증감분이 발생시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 제14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하여 상업, 업무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

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존 건축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사업시행 후 공공시설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정리 전·후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6조(공사비등 지불) ①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할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 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정한후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시에는 「군산시체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기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소유자등 변동)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토 지 평 가

제22조(토지의 평가기준)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정리전·후의 평가는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리 후 평가는 환지처분시점 수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정리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전 토지평가는 당해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포락지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24조(정리후 토지의 평가) 정리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25조(지수의 결정) 정리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 당 지수를 편

의상 1,000개 전·후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환산하여 정리 전·후의 획지지수를 결정한다.

제26조(각 제곱미터 당 지수산정) 종전의 토지 및 정리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제곱미터 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27조(평가지수 산정) 평가지수는 해당토지 면적에 제곱미터 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제28조(권리의 지수)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제4장 토지평가협의회

제29조(기능)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구역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제3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당해직 공무원 중 5명 이내의 공무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당해 사업구역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은 제29조 각 호의 토지평가심의 사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31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 사업 실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4조(회의록 등)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고, 회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0-1563호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환지설계의 기준(안 제2조)
- 나. 환지면적의 최소규모(안 제9조)
- 다. 체비지 매각 방법(안 제20조)
- 라. 입찰방법(안 제22조)
- 마. 소유권이전(안 제31조)
- 바. 이자 등의 징수(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공영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전화 : 450-4448, FAX : 451-428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공영개발담당 (전화 450-444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안)

1. 제정 이유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환지설계의 기준(안 제2조) : 환지교부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

나. 환지의 위치(안 제6조)

- 1) 환지의 위치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
- 2)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
- 3)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하고, 이 경우에는 면적이 큰 토지위치에 환지

다. 환지면적의 최소규모(안 제9조)

- 1) 주거지역 200㎡이상
- 2) 준주거 및 상업지역 400㎡이상

라.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안 제12조) :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지역 보통지는 11m이상, 각지는 13m이상, 기타지역 보통지는 13m이상 각지는 15m이상, 앞길이는 안길이의 50퍼센트 이상

마. 체비지 관리자(안 제17조)

- 1) 토지의 관리자는 시장
- 2) 시장은 당해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3)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바. 매각방법(안 제20조)

-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시 1명의 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 다)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
- 라)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때
- 마)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 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 사)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때

2)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

사. 입찰방법(안 제22조)

- 1) 입찰은 입찰서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후 제출
- 2)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입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
- 3)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를 게시판에 게시

아. 소유권이전(안 제31조)

- 1) 환지확정처분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
- 2) 토지의 최초매수자는 시장과 매매계약체결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하고, 사업 시행중 명의변경된 토지는 최종 명의변경 처리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 3)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

자. 상계(안 제39조)

- 1)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
- 2)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청산 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차. 이자 등의 징수(안 제43조)

- 1)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 징수
- 2)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후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법무계 사전 협의

라. 기 타

- 1) 제정안 : 붙임
- 2) 입법예고 : 2010. 10.15~ 11.4(20일)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 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한 정리전
· 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라 함은 환지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건물이 있는 획지 등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정리후 획지의 면적) 정리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

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후 획지면적 = 정리전 권리지수/정리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전 필지의 면적×정리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비례율
3. 비례율 = (1-평균 감보율)×택지이용증진율, 또는 정리후 환지대상 총지수/ 정리전 총지수
4. 택지이용증진율 = 정리후 택지평균지수/정리전 토지 평균지수

제6조(환지의 위치)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③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④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권리면적이 타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넓은 면적일 때에는 일부 또는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다른 자리 환지 할 수 있다.

제7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 환지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의하여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 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각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자리환지 할 수 있다.

제8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지역은 200제곱미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제8조 규정에 의한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후 감보율 적용에 의하여 최소 대지면적에 10%미만 미달될 때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이 주거용지 200제곱미터,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400제곱미터에 10%이상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치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증환지 요청이 있을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지장이 없는 50%범위내,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2명 이상의 동의에 의한 공동환지가 본문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당해토지 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

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제11조(부담율) ① 제3조에 따라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부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전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2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지역 보통지는 11미터이상, 각지는 13미터이상, 기타 지역의 보통지는 13미터이상 각지는 15미터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5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폭원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4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5조(환지예정지 사용)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발급)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기타 확인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제3장 체비지 매각

제17조(관리자) ① 토지의 관리자는 시장이 된다.

② 시장은 당해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

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③ 시장이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매각책정) 분임 관리자는 사업지구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취하여 체비지매각명세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사정할 수 있다. 다만, 2회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 예정가격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사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부하였으나 경쟁자가 없을시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단,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때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
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기타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경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에 매각하기가 곤란할 때, 또는 이를 타에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케 하거나 타에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9. 도시개발사업 이전부터 환지설계 원도상에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0.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1.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공사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때(공사발주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2. 제1호 부터 제10호 까지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13. 2회 이상 공매에 의해 유찰된 토지
 -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1조(매각공고) 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1개 이상의 중앙지 또는 지방지 게재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공고 또는 시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이후 매각토지 예정 목록중 유보 및 기타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2조(입찰방법) ① 입찰은 입찰서(별지 제7호서식)를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제출한다. 다만, 시장은 입찰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당해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입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조서(별지 제9호서식)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매수신청) 수의 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미지 매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신청서류로 가름한다.

제24조(매각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 매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입찰보증금) 입찰자는 매수신청시에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군산시 시금고에 납부하고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한다.

제26조(입찰무효 및 유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군산시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 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만일 때
 5.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때
 2. 기타 시장이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

제27조(계약체결) ① 제22조에 따라 낙찰된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11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 조치한다.
-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군산시 시금고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별지 제11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당해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매각토지대금은 계약체결시 해당 토지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완납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의 내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매각토지의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토지대금을 군산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연체금리 이율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6개월 경과 시에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해약할 수 있다.
-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 납

부가 가능하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체비지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의 변경승인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기타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토지사용승락신청(별지 제15호서식)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후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정한 용도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당해 토지

를 지정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이 경우 기 불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
6. 기타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조치 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부서에 과세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소유권이전) ① 환지확정처분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교부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최초 매수자는 시장과 매매계약체결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하고, 사업 시행중 명의변경된 토지는 최종 명의변경 처리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지적증감처리) ① 환지확정처분시 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군산시 시금고의 일반대출연체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사업구역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증감대금 정산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완납증명발급)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후 토지대금완납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청 산 금

제34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제1항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결정한다.

제35조(사전청산) ①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토지의 환지에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체비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确定的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에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치 않을 시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청산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20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1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2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23호서식)

제37조(권리자별 청산)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38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39조(상계) 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청산 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1조(납입고지서 발송) 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환지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1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한다.

제42조(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 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이자 등의 징수)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 후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기한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6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27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45조(등기축탁의 제한)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축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축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축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전에도 할 수 있다.

제46조(청산금의 교부)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 분은 공시 송달 할 수 있다.

③ 교부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 인감증명 1통
2. 인감도장
3. 청구서(별지 제28호서식)

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과오납금 환불)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하여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환불한다.

제48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후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일반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9조(합병처리)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구역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면적에 환지된 토지의 감보율을 공제한 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가감하고, 일반증감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제50조(대리인 선정 신고) 조례 제20조에 따라 대리인 선정 신고는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한다.

제51조(토지소유자등 변동 신고) 조례 제2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변동 신고는 별지 제32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신청서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명	종전의토지				환지에정지			사용면 적(㎡)	사용목 적	소유자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블럭	롯트	지적(㎡)			주소	성명
신 동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첨부서류 : 1. 인감증명 1통.
2. 경계명시측량성과도 1부.
3. 건축계획평면도 1부.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서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체비지)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부여
 여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지구명	종전의토지				환지예정지			사용면 적(㎡)	사용목 적	소유자	
	동명	지번	지목	지적(m)	블럭	롯트	지적(m)			주소	성명
신 동											

붙 임 : 허가조건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이면)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허가조건

1. 환지(체비지)예정지를 사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 지장물등을 지체없이 철거, 이전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2. 경계표시 말뚝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담장등 경계부분 시설공사시 감리단의 승낙및 측량대행업체 관계자의 입회하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경계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하고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건축물등의 인, 허가와 착공, 준공등은 관계법에 의거 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착공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감리단에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지(체비지)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토량과 각종 지하매설물(쓰레기등)에 대하여는 수허가자가 부담하여 외부로 적법하게 반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한 면적이상의 사용, 목적이외의 사용 또는 인근지역을 침범 사용하였을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수허가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환지(체비지)예정지 사용에 따른 단지토공 및 상하수도(오,우수)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계획은 본 사업지구의 단지계획에 의거 군산시 관련부서 및 감리단과 사전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본 사업 완료후 확정시 발생하는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는 확정후 청산금으로 정산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6. 기타 허가시점에 현장 및 환지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조건 부여

(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매각명세서

번호	지구명	블럭	롯트	면적(m ²)	용도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20 . . .입찰

번 호	지구명	브 렉	롯 트	면적(m ²)	금 액(원)		용도지역	비 고
					단 가	예정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체비지매각공고

군산시 공고 제 호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20

군 산 시 장

1. 매각재산(목록은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에서 배부)

지 구 명	필 지 수	면 적(m ²)	예 정 금 액 (원)	비 고

2.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 20 ~ 20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3. 입찰일시 및 장소 : 20 (:) 군산시청 회의실

(입찰자 인원수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필지별매각.

5. 입찰등록시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1통, 인감증명1통(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1통(법인에한함), 입찰보증금 납부서1통, 인감도장, 보증금반환용 온라인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부분)

6. 입찰시 구비서류 : 인감도장(입찰등록시 신고한 인감), 신분증.

7. 낙찰자 결정방법

개별필지에 대한 낙찰자 선정은 필지별 예정금액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

8. 입찰보증금 및 대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요율)	매매계약체결	계약보증금	대금납부기일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낙찰일로부터 10일이 내	낙찰금액의 10/100이상	계약일로부터 6개월

가) 필지별 입찰액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군산시 금고에 입찰자 이름으로 납부한 후 입찰등록시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를 매입하여야 함.

나) 대금납부는 납부기일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할 경우

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나 연15%의 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20 . . .부터 매수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함.

9. 낙찰자의 보증금조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위 보증금은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함.

10. 입찰 무효사항

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회수,차수 및 시행일자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때.

나) 입찰서에 재산의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인감도장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때.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에 미만일 때.

마)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11. 기타사항

가) 금번 매각공고한 미장지구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사업진행 정도 및 주변여건등에 따라 잔금 납부후라도 사업시행자(군산시장)에게 별도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매수신청자는 입찰 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어 매수신청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우리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매수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제출된자 : 인감증명 첨부)에 한하며, 대리인 참여시 매수신청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입찰참가.

다) 체비지 매입후에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매각토지의 지장물지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등에 관한 사항, 체비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내용(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등), 건축관련 법규 및 현장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후 신청하여야 함.

라) 관계도서를 비치 열람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공영사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및 규칙에 준함.

(별지 제6호서식)

체비지매각보류공고

군산시 공고 제 호

군산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공고한

체비지중 다음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 . .

군 산 시 장

매각보류재산

번 호	지 구 명	브 렉	롯 트	면 적(m ²)	보류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입 찰 서

입찰공고 번호	제20 - 호	입찰일	20 년 월 일
입찰건명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		
입찰물건지표시	미장지구	브릭 롯트, 면적 :	m ²
입찰금액	일금 원정 (₩)		

귀사가 정한 일반조건과 기타 특수조건에 따라 위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 주소 :

성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필지별 입찰조서

입찰체비지 : 미장지구 브릭 롯트, 면 적 : m²

번호	입찰등록자		입찰금액 (원)	입찰보증금 (원)	입찰가능금액 (원)	적요
	주소	성명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필지별매각
- 입찰일 : 20 년 월 일
- 입찰담당관 : 공영사업과장 ○ ○ ○ (인)

(별지 제9호서식)

체비지낙찰자조서

번호	지구명	블럭	롯트	면적(m ²)	낙찰금액(원)	낙찰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매수신청서

등록번호

○ 매수신청 체비지의 표시

지 구 명	브럭	롯트	면 적(m ²)	용 도	비 고

상기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붙 임 : 1. 인감증명1통.

2.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1부.

3. 예금통장사본1부. 끝.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체비지매매계약서

○ 토지의 표시

지 구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브 릅	롯 트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군산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 ○ ○ 를 “을” 이라 칭하여 아래조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 매매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된 면적이므로 공사완료후 환지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증감이 발생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토지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 2 조 : “갑”과 “을”은 위 부동산 매매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 3 조 : “을”은 전조의 매매대금중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이상인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금 원정에 대하여는 20 년 월 일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제 4 조 : 매매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는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환지확정처분 후에 이를 이행하며, “을”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제 5 조 : 본 계약의 재산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갑”의 승인없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단, 계약 체결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지며, 공사 완료 전에는 본토지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 6 조 : “을”이 제3조의 잔금납부 기한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 7 조 : “갑”은 “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연15%의 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 제4조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 : 본 계약에서 정한사항 이외의 본 토지 매매에 관한 필요사항은 당해 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 조 :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서기 20 년 월 일

매도인(갑) 군산시 시청로 8번
 군 산 시 장 o o o

매수인(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12서식)

군 산 시

수 신 :

제 목 : 과세자료 통보

군산시공고 제 호(20 . .)로 예비지매각 공고하여 매각한바 있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잔금완납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세관련 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명	블럭	롯트	면적(m ²)	매매금액(원)	계약체결일	잔금완납일	매수자

군 산 시 장

(뒷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매수자와 군산시장과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 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의변경 승인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매각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5.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 승인조건을 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우리시와 최초 매수자간에 계약체결된 체비지매매계약 내용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산 의 표 시		미장지구 브릭 롯트, 면적 m ²		
양도인	계약체결일 (명의변경일)			
	당초매수금액	₩		
	성 명 주 소			
양수인	매매금액	₩	잔금지급일	
	성 명 주 소			

붙 임 :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조건. 끝.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뒷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매수자와 군산시장과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 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의변경 승인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매각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5.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
□토지사용승락신청서

접수일자	20		접수부서	공영개발과		
신청종목	토지대금납부증명	토지사용승락	사용목적	통수		
토지표시	지구		블럭	롯트	수수료	
사 용 자	주소		공부대조자	담당자	팀 장	통제인
	성명					

신청조건 : 금회 사용승락 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전까지 예정지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율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 미만을 사용하며, 연접토지와 지적 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토지사용승락서

- 1. 재 산 표 시 : 지구 브럭 롯트
- 체비지 예상면적 m²
- 2. 사 용 목 적 :
- 3. 사용자 주소 :
- 성명 :

단, 금회 사용 승락한 면적은 환지처분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을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와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토지사용을 승낙함.

20 . . .

군 산 시 장

(별지 제17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일
매수인	성명또는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환 지 예 정	지 구	브 렉	롯 트
	체비지예정면적		m ²
환 지 확 정	확정면적 (대) :		m ²
증 감 의 차	증 :	m ² , 감 :	m ²
<p>위 재산에 대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매수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장 귀하</p>			
구비서류			수 수 료
<p>1.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p> <p>2.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영수증사본(해당토지에 한함)</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토지대금납부(완납)증명서

1. 재산의 표시

미장지구 브릭 롯트
예정면적 m²

2. 토지대금 : 일금 원

3. 완납일자 :

4. 매 수 자

주 소 :

성 명 :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20 . . .

군 산 시 장

(별지 제19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

(단위:m²,원)

번호	종 전 토 지				권리 면적	환 예 면 적	청 산 면 적	단가	금액	납기	납부인 (소인)	납부자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총괄조서

(단위:m²)

권리번호	종전토지				환지에정지				확정							징수금 (원)	교부금 (원)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브럭	롯트	권리면적 과도	환지면적 부족	동명	지번	지목	권리면적	환지면적	과도면적	부족면적			평정 단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m²)

권리번호	종전토지				확 정									청산금수불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블럭동명	롯지번	지목	권리면적	환지면적	과도면적	부족면적	평정단가	징수금(원)	교부금(원)	가산금	청산일자	대조	확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m²)

권리번호	종전토지				확 정									청산금수불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브릭동명	롯데지번	지목	권리면적	환지면적	과도면적	부족면적	평정단가	징수금(원)	교부금(원)	가산금	청산일자	대조	확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불환지청산조서(법제30조처분지)

번호	종 전 토 지				권리면적 (m ²)	단가 (원)	교부금 (원)	지급대상자		교부일	비고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

군산시 미장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대장번호	물 건 지		소유자	징수청산금	교부청산금	상계후 청산금액	
	동 명	지 번				징 수	교 부

20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토지등기부등본 각1통

군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5호서식)

납 부 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취급처	군산시 공영사업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영수필통지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취급처	군산시 공영사업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			
수납일부인			

※납부장소:

영 수 증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취급처	군산시 공영사업과		
N O	지구명		
예산과목	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	동	번지	
납 부 자			
일 금	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취급자 인	

※납부장소:

(별지 제26호서식)

독 축 장

지 구 명	미장지구							
물 건 지	동 번지							
2 0 년 도	서기 20 년 월 일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금 수 입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군산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군 산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최 고 장

(문의처) 군산시 공영사업과(전화 : 063-450-4448)

귀하의 체납청산금(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아래와 같으니
20 . . .까지 군산시금고에 이 최고장과 함께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명	수납번호	물건지	년도	체납금액	체납처분 지	체납이자	비고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군 산 시 장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청 구 서

○ 청구금액 : ₩ (금 원정)

○ 청구내역

종전지번	확정지번	교부금(원)	계좌입금신청			비고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상기금액을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청산
금으로 청구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전화 :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채 권 양 도 서

- 지 구 명 :
- 물건지소재 : 동 번지
- 부 족 면 적 :
- 교부청산금 :

상기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청산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20 . . .

양 도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양 수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붙 임 : 인감증명 각1통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군 산 시

수 신 :
 받 음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지구명	환 지 확 정				청산결정액 (원)	기납부액 (원)	과오납부액 (원)	비고
	동명	지번	지목	면적(m)				

군 산 시 장

(별지 제31호 서식)

대 리 인 선 정 신 고

미장지구내 토지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 구 명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종 전 토 지 : 미장동 번지(m²)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첨 부 서 류 : 인감증명서 1통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주소(성명)변경 신고서

지 구 명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종 전 토 지 : 미장동 변지(m²)

변 경 사 항

변경전주소(성명)	변경후주소(성명)	비 고

상기와 같이 주소(성명)가 변경되었기에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행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소(성명)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67호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공포일 '10.9.17)에 따라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2]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여 시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안 별표 2]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가) 공장등록 증명 1통을 1건으로
- (2)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가) 비고 단서 조항 중 “또는 도면첨부” 삭제
- (3) 일반행정관계
 - (가)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계속” 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 으로
 - (나) 종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500원을 800원으로
- (4) 문화관광체육관계
 - (가) “체육시설업 신고” 를 “체육시설업의 신고” 로 “의” 삽입
 - (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를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로 “의” 삽입
- (5) 해양수산관계
 - (가)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3,000원을 1,000원으로
 - (나)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가) 어업권원부의 열람신청 1,500원을 800원으로
 - (다)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나) 어업권원부의 등록교부 신청 1,500원을 800원으로
 - (라)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 신청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500원을 800원으로
 - (마) 어업허가증(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1,500원을 1,000원으로

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신설 [안 별표 2]

- (1) 해양수산관계
 - (가)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으로

다. 법 개정사항 반영

- (1) 19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라. 용어 정비

- (1)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

3. 의견제출

「군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 세외수입계

(전화 063-450-6133, 팩스 063-453-9183, 전자우편 baumroot@korea.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담당자 문미영(전화 063-450-61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이하“제증명”등 이라 한다)”을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 등”을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표에 규정된”을 “별표에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대이상”을 “2대 이상”으로, “수건”을 “여러 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하므로서”를 “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므”를 “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①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① 영업주	1통	500원	
② 중소 기업자	1통	500원	
③ 광업, 공업, 상업	1통	200원	
④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② 생산실적	1통	300원	
③ 수출실적	1통	300원	
④ 납품실적	1통	300원	
⑤ 건물사용	1통	300원	
⑥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⑦ 보세 물건에 관한 관찰(재교부)	1통	300원	
⑧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⑨ 시설 보유 증명	1통	300원	
⑩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 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① 미분배 농지	1통	300원	
②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 문서	1통	300원	지적 관계 제외
· 토지 도면	1통	300원	
· 건물 도면	1통	300원	
③ 공부 열람			
· 기본료	1시간당	10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④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5.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5,000원	
②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300원	
③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단, 도시계획도
④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1필지	300원	
⑤ 도시계획 증명(부지증명)	1필지	700원	
⑥ 위 ④ 및 ⑤ 이외의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확인	1건	200원	
⑦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⑧ 환지 예정지에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원	
⑨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원	
⑩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300원	
⑪ 토지대금 완납 증명	1필지	300원	
⑫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	1필지	300원	
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당	1,000원	(단,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⑭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건	100원	타시군 2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①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원	
②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확인서	1주택	800원	<1기준년도 1호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호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7.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필지	300원	
②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필지	300원	
③ 원천징수금 제증명	1필지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필지	300원	
⑤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⑥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300원	
⑦ 면세용도 물품 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①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② 공(시)영 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기타 제 증명			
① 수산업에 대한 증명	1통	300원	
② 소방시설 완비 증명	1통	500원	
③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 하는 증명	1통	300원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기준년도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별, 필지별 추가시 200원씩 가산) (인가,허가,신고,신축 등록지정확인등)	1필지	800원	
1. 일반행정 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신규	1건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② 토지등급 성정 심사 청구 신청	1건	500원	
③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④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⑤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⑦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⑧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5,000원	
2. 산림 관계			
①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수산 관계			
①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3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공업입지 지정 승인	1건	1,000원	
② 전기 보안 담당자 대형 승인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③ 기계(전기)공업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	1건	1,000원	
④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5. 건설 관계			
①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	점용문 1건	1/1,000	
②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공사비의 1/1,000	
③ 토석사력의 등 공유수면 산출물 채취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④ 하천(공유수면)점용(물증가명의) 변경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⑤ 하천토석(사력, 하천산출물)채취변경 허가	1건	500원	
⑥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	1건	1,000원	
⑦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건	1,000원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⑧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⑨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⑩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 신청	1건	500원	
⑪ 공(시)영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⑫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500원	
⑬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⑭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⑮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⑯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⑰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1건	500원	
6. 보건사회 관계			
①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②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③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40,000원	
④ 의료기관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0원	
⑤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 기공소의 인정 신청	1건	10,000원	
⑦ 치과 기공소,안경업소 양도·양수 신청	1건	10,000원	
⑧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1건	20,000원	
⑨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	1건	25,000원(20,000원)	※ ()는
⑩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사항 변경	1건	13,000원(10,000원)	읍·면 지역임
⑪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원(40,000원)	
⑫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1건	25,000원(20,000원)	
⑬ 기타 유기장업 신고	1건	25,000원(20,000원)	
⑭ 기타 유기장업 신고사항 변경	1건	13,000원(10,000원)	
⑮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⑯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1,200원)	
⑰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10,000원)	
⑱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5,000원)	
⑲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2,300원)	
⑳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1,2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㉑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원)	
㉒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원)	
㉓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7. 문화관광체육관계			
① 비디오물, 게임물관매, 대여업등록	1건	2,000원	
② 비디오물, 게임물관매, 대여업등록 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1,000원	
③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④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⑤ 종합게임장업 지정신청	1건	20,000원	
⑥ 공연장의 등록	1건	20,000원	
⑦ 공연장의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⑧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⑨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⑩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⑪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8. 해양수산관계			
①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②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③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	1건	4,500원	
④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신청	1건	4,000원	
⑤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원	
⑥ 근해어업허가신청	1건	4,800원	
⑦ 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 종묘 생산어업허가 신청	1건	3,500원	
⑧ 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	1건	3,200원	
⑨ 유어장 지정신청	1건	2,000원	
⑩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500원	
⑪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1건	3,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⑫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1,200원	
⑬ 입어 재결신청	1건	3,200원	
⑭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	건당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8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록교부 신청	1건	8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건	8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⑮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⑯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1,600원	
⑰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600원	
⑱ 어업신고	1건	1,600원	
⑲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원	
⑳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㉑ 어업 재개(개시)신고	1건	1,000원	
㉒ 수산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 해제 허가 신청	1건	1,500원	
㉓ 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	1건	1,500원	
㉔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㉕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㉖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㉗ 내수면어업법 23조			
-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1건	19,000원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1건	17,000원	
-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	1건	8,000원	
㉘ 낚시어선업 신고	1건	6,000원	
㉙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	1건	3,000원	
㉚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 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등----- ----- -----.</p>
<p>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 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 ----- -----.</p>
<p>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 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 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 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p>	<p>제4조(기준) ① ----- 별표에 따른 ----- ----- ----- ----- 1명----- -----.</p>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군 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

-----.

② 여러 사람-----

----- 1명-----
-----.

③ -----
----- 2대 이상-----

----- 여러 건-----

-----.

제5조(징수방법) ① -----

----- 함으로써 -----.

----- 함으-----.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

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
명 등

2. ~ 4.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
면한다.

1. ~ 3. (생략)

조에 따른 수급권자-----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10 -1569호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4

군 산 시 장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제명을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명칭 개정 (**안 조례 제명 변경**)
⇒ 조례제명 변경으로 포괄적, 적극적인 학교급식 지원 추진
-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안) 제명 변경으로 조례 제2조2호

- 『식품비』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학교급식경비』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2호)
- 조례(안)제10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의 신설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3호)
 -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 조례정비 요청에 따라 『품질인증』 → 『우수관리인증품』 농산물로 개정 (안 제2조 4호가목)
⇒ 우수관리인증품(GAP)인증 위해요소 관리 농산물 공급기준 마련
 -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로 『지원대상 중 셋째자녀 이상의 대상자에 대하여 식품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안 제4조)
⇒ 급식대상 단계별 무상급식 시행으로 셋째자녀 식품비 우선지원 부분 삭제
 -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안)제 10조의 신설로 조례 제5조(지원방법) 『현금으로 지원 한다』 에서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5조 제1항 제2항을 일부개정하고 제2항 1호~4호, 3항, 4항을 신설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설로 지원방법 다양화
 - 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현을 위하여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4조(지원대상)에 규정된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안 제5조의2 제1항, 제2항)
⇒ 학교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지원 항목 신설
 -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 : 450-4216, FAX :450-4278,

전자우편 : simjn66@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계(전화 450-42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여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2조제4호(중전의 제3호)가목 중 “품질인증”을 “우수관리 인증품”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지원대상중 셋째자녀 이상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식품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등의 방식으로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업자로서 시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

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③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제1호에 의한 급식 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p> <p>2. “식품비” 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p> <p><신 설></p> <p>3. “우수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p>	<p><u>군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 이란 ----- ----- ----- ----- -----.</p> <p>2. “학교급식경비” 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 시설·설비비를 말한다.</p> <p>3. “학교급식지원센터” 란 군산시 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여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p> <p>4. -----</p>

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 마. (생략)

제3조(시의 임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지원대상중 셋째자녀 이상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식품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

 -----.

가.-----
우수관리 인증품 -----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3조(시의 임무) 시장-----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

 -----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

전하고 신선한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수 식재료 구입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한다.

②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군산시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원한다.

<후단 삭제>

② 지원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등의 방식으로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업자로서 시장의

<신 설>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학교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학교 무상급식 지원) ①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 · 제11조 (생략)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1570호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제정(법률 제10219~10221호, 2011. 1. 1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편되고 종전 지방세법시행령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개편됨으로 하위법령인 『2011년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송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지급대상관련 지방세법 법조항을 종전 지방세법시행령 법조항에서 개편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법조항으로 수정함.
- 나.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간사 명칭을 『담당』에서 『계장』으로 변경함.
- 다.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지급규정 신설함.
- 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징수과(전화-450-4295, 팩스453-9183, s1k1s1@korea.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등 가능

라.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 징세계
(전화063-450-42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조제1항중제4호(신설)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 이란”으로,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제7호(신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를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을 “제3조제1항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1건당”을 “건당”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총괄담당국장이 되고, 세입업무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중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1담당 또는 세외수입담당이 되고”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세계장 또는 세외수입계장이 되고”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징수1담당”을 “징세계장”으로, “세외수입담당”을 “세외수입계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중 “다음과 같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5조제5항중 제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을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으로, 제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제3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를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신설〉</p> <p>② 「지방세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산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군산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④ (생략)</p>	<p>제2조(지급대상) ① -- 각 호 ----- 해당하는 사람 ----- 범위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지방세기본법」 제 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p> <p>②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 67조에 따른 ----- .</p> <p>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 이란 ----- 체납처분 · 관허사업제한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 .</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②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p>	<p>제3조(지급기준) ① ----- ----- 다음 각 호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p> <p>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 ----- ----- -----.</p>
<p>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생략)</p>	<p>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 -----.</p> <p>1. -----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총</p>	<p>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p>

현행	개정안
<p>관담당국장이 되고, 세입업무총 관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p>
<p>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1담당 또는 세외수입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p>	<p>④----- -----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세계장 또는 세외수입 계장이 되고, ----- -----.</p>
<p>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p> <p>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p>	<p>⑤----- 다음 각 호의 ----- -----.</p> <p>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p>
<p>⑥ (생략)</p>	<p>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지급신청) ① (생략)</p>	<p>제7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제3조에 따른----- ----- ----- -----.</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 ----- -----.</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8조 (지급) ① ----- 제7조에 따른 ----- ----- ----- ----- -----.</p> <p>② 제1항에 따른 ----- ----- ----- ----- -----.</p>
<p>제9조(환수) ①·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9조(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 -----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 ----- -----.</p>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72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도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됨에 따라
- 나.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중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

현행 (3개 자치법규)

개정 (5개 자치법규)

군산시 시세 조례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제정) 군산시 시세 조례(전부개정)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제정)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전부개정)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전부개정)

나.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부과징수 규정 재편성

구 분	현행 : 8개 세목	개정 : 5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재산세 ② 도시계획세	① 재산세
유사세목통합	③ 자동차세 ④ 주행세	② 자동차세
현행유지	⑤ 주민세 ⑥ 지방소득세	③ 주민세 ④ 지방소득세
	⑦ 담배소비세	⑤ 담배소비세
폐 지	⑧ 도축세	폐지

다. 현행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총 29개 조문)하고,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라. 지방세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
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최광식 (전화
063-450-4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군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시세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통·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시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 시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시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영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2. 체납된 시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시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8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군산시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른 시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 4. 납세보증보험증권
-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전에 압류할 수 있다.

-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년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시세확정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채납자
2. 채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채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채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채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채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청·동주민센터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채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채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채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의 채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시장은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4조(채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채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절 처분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채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채납된 시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

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 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채납처분비·가산금·시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채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채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9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

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상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중 시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경쟁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의 권리 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 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시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시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시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시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시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심사·의결)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73호

『군산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도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됨에 따라
- 나.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산시 시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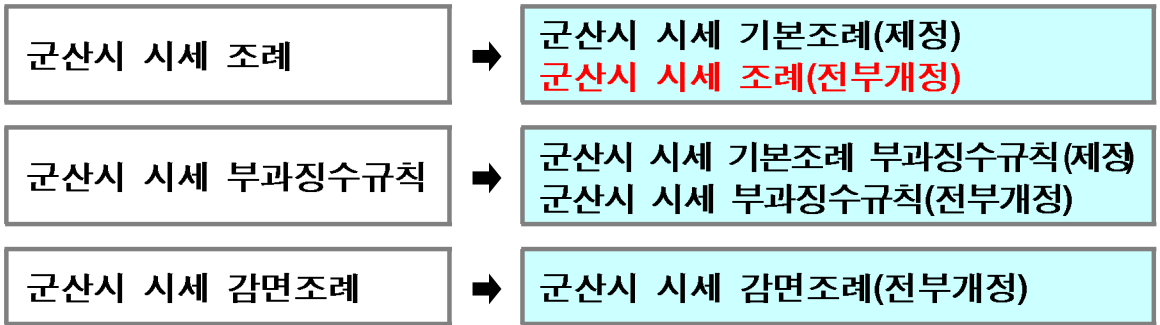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중 총칙분야는 지방

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

현행 (3개 자치법규)

개정 (5개 자치법규)



나.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부과징수 규정 재편성

구 분	현행 : 8개 세목	개정 : 5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재산세 ② 도시계획세	① 재산세
유사세목통합	③ 자동차세 ④ 주행세	② 자동차세
현행유지	⑤ 주민세 ⑥ 지방소득세	③ 주민세 ④ 지방소득세
	⑦ 담배소비세	⑤ 담배소비세
폐 지	⑧ 도축세	폐지

다. 현행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총 29개 조문)하고,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라. 지방세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
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최광식 (전화
063-450-4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산시내(이하 “시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구분	세액
읍·면	2,000원
동	3,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산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74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도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10. 3.31 공포, '11. 1. 1 시행)됨은 물론
- 나. '11년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 시행에 앞서, 금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일몰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우리시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 이관(15개 조문) :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15개)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9)	②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17)
③장애인 소유자동차(\$17)	④노인복지시설(\$20)
⑤평생교육시설(\$44)	⑥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42)
⑦농협중앙회(\$14)	⑧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차(\$67)
⑨임대주택(\$31)	⑩농어촌주택개량(\$16)
⑪시장정비사업(\$83)	⑫사권제한토지(\$84)
⑬공공기관 지방이전(\$81)	⑭법인 등의 지방이전(\$79)
⑮화물→승용 분류 자동차(지방세법)	

나.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로 존치 : 16개 조문

전부개정내용 (16개)	
①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	②종교단체의 의료업
③지방의료원	④한센정착농원
⑤문화재	⑥미분양주택
⑦지역특산품생산단지	⑧지식산업센터
⑨지방공사	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⑪신용보증재단	⑫외국인투자유치
⑬농공단지 대체입주	⑭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⑮기업도시	⑯전라북도 고용창출기업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

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최광식 (전화 063-450-4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군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

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1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옥구농공단지
2. 서수농공단지
3. 성산농공단지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전라북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보 칙

제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75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도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됨에 따라
- 나.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중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

현행 (3개 자치법규)	개정 (5개 자치법규)
군산시 시세 조례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제정) 군산시 시세 조례(전부개정)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제정)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전부개정)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전부개정)

나.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부과징수 규정 재편성

구분	현행 : 8개 세목	개정 : 5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재산세 ② 도시계획세	① 재산세
유사세목통합	③ 자동차세 ④ 주행세	② 자동차세
현행유지	⑤ 주민세 ⑥ 지방소득세	③ 주민세 ④ 지방소득세
	⑦ 담배소비세	⑤ 담배소비세
폐지	⑧ 도축세	폐지

다. 현행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총 29개 조문)하고,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라. 지방세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 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최광식 (전화 063-450-4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과부서의 장 : 시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 :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 : 군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세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시세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시세는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외에 수시분으로 시세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5조(과세자료 등의 작성 및 대장비치) 이 규칙에 따라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자료, 대장 및 내역을 컴퓨터,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정보처리매체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

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대장 및 내역은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서류의 송달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접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반송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세무공무원은 우편송달한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이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송달부 등의 관리) 제6조에 따른 송달부는 세목별,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송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
3.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인이 서명날인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사유
4.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이를 유치한 경우에는 수령거부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및 유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

제9조(대장 및 그 밖에 서류의 정리) 시세징수에 관한 대장, 계산서, 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는 회계연도, 세입과목, 납기별 또는 행정구역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절 부과·징수

제10조(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 시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통지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파일에 수록하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납부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유물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과 소유지분
2. 상속인에 대한 부과결정의 경우에는 상속인 수,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및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고납부방법에 따른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시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일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를 작성하여 매 다음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신고납부한 시세의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과부

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에 수납인을 날인하거나 전자소인을 하여 이를 즉시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부를 전자적 형태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인을 소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징수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액에 대하여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결의와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정액통지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보통징수 등 부과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납부사항에 대하여 시금고의 수납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에 따른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번호 : 전산으로 부여되는 고지서발행번호로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2. 회계연도·구분 : 제4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3. 회계·과목 : 별표를 참고하여 기재한다.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주소 : 법에 따른 납세지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6. 과세대상 : 법에 따른 세목별 과세대상을 토지면적·건축물면적·차량등록번호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납부기한 : 고지분의 경우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납부기한을 명확히 기재한다. 수시로 부과하는 시세의 경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납기전징수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세목 : 법 제7조에 따른 세목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줄여서 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9. 세액 : 세액란에 맞추어 기재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0. 직인 : 법, 지방세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과세권자를 기재하고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관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인을 인쇄하거나 전자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세액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는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1개 이상의 연도분 또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1장의 고지서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도 또는 세목에 대한 세액을 구분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납세고지서의 재발급)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고지서의 훼손 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재발급신청을 받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에 재발급 납세고지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일부납부, 분납 등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발행의 경우에는 고지서 여백의 각 쪽마다 고무인 등으로 “일부납부” 또는 “분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납부 시세의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신고납부하는 시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하는 시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고서
2. 법인장부·검인계약서·증여 등 무상취득계약서·사용승인서·판결문·경락관련서류 또는 소득세납부 영수증 등 세액계산 관련 증명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시·시세 모사전송·우편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납세고지서

를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서를 수령하여 수납기관에 해당 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신고 및 납부시세 모사전송·우편 접수대장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시세의 수납) ① 시세는 수납기관이 아니면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납과 징수관의 명에 따라 체납처분에 따른 교부청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에 따른 현금영수증서원부에 따라 영수증을 납부자 또는 그 대리인 등에게 교부하고 수납부 등 관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및 제26호서식을 작성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시세 수납내역의 확인점검)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의 부과·신고 및 납부내역과 시금고 수납내역의 자료를 상호대사하여 점검하고 불일치시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시금고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소인을 할 수 있

다.

제18조(소인불일치자료 등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소인하였으나 부과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OCR 미소인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인불일치자료를 처리한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원인별 일계표 및 월계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에서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는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영수필통지서의 불명자료, 미도착자료 등에 대하여는 은행 조회 등으로 신속히 확인하여 시세를 납부한 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작성하여 해당 체납지방세가 징수 또는 감액, 소멸시효 등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지방세관계법·조례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사항을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액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 결정액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납기별 체납액 징수) 독촉기한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체납정리표를 작성하여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징수촉탁 등) 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 및 징수수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수촉(수)탁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부과철회) ①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한 시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징수유예일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하여도 그 징수를 확보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과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전·출입사항 등에 따른 소재 확인
2. 등기(등록)부, 재산세과세대장 및 관허대장 등 관계공부에 따른 소재 또는 재산의 확인

② 부과철회한 후 재부과결정을 한 경우 다시 징수유예나 부과 철회를 할 수 없으며, 부과 철회 후 다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를 하여야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시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한 경우 연 4회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 및 재산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세입마감) ① 제10조에 따른 보통징수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은 매년 12월 15일까지 종결되어야 하며,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징수 등 조세채권을 긴급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 월의 징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의 마감은 해당 월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종료하거나 그 출납을 폐쇄함으로써 세입을 확정한다.

제26조(시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4월 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의 체납액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시세는 결손처리하고 체납액정리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시세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야 하며, 징수결정액을 이월함과 동시에 해당 연도의 장부를 각각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시세환급금

제2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세를 시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시세감액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시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정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시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시세환급금은 체납된 다른 시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그 잔여금은 해당 시세의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급한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게 귀속하는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시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대표자
4. 시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재산상속일 경우에는 재산의 등기부등본·등록원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2.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시세환급금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세환급금의 충당) ① 영 제63조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년도의 시세환급금을 현년도 미납금에 충당하거나 같은 연도내의 시세환급금을 동일 세목의 미납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상의 미수납액 및 시세환급금액에서 충당할 금액을 감하고 수납부·징수부 및 세입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세환급금충당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시세환급금의 통지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

여야 한다.

제31조(시세환급금의 환부절차) ① 시세환급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그 시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시금고에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금고는 시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지급필통지서를 징수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징수유예 등과 납세담보

제3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3호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상장법인이 발행한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3개월 이상 상장된 상장주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85조제5호에 따라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③ 중소기업납세자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협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한다.

④ 납세담보는 다음 각호중에서 납세자편의별로 선별하여 정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4. 토지
5.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

⑤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정리부를 정리하고, 징수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행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등”이라 한다)의 제조사를 하여 납세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 소재지등의 제조사를 하였으나 소재지 등이 확인이 되지 않고 6개월이 경과되면 부과철회를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과부서의 장은 부과철회를 한 후에 년 2회 이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지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과결정을 하고 이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11조제6항의 경우를 준용한다.

⑥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등) ① 법 제85조제1호에 따른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가 그 금전으로 시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

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시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납세자가 시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된 납세담보로써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세를 징수하거나 환가금액을 시세에 충당한다. 이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시세충당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 그 밖에 유가증권,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기계장비인 경우에는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

③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환가금액이 징수할 시세에 충당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38조의 공매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담보의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와 관련하여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 또는 징수부서의 장은 납세담보에 대하여 매월 1회 보관 및 관리상황을 자체점검하고 관리대장의 점검란에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금고에 보관을 의뢰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관·관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시에는 담보이행시기의 도래, 납부 또는 징수유예, 담보의 변경, 담보의 보완필요성 유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36조(시세확정전 보전압류) 조례 제28조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절 체납처분 절차

제37조(자격증명서의 제시 등)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휴대하고 영 제105조에 따른 자격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체납내용이 기록된 지방세체납정리표
2. 압류조서
3. 수색조서
4. 봉인용지
5. 보관증 용지

제38조(수색)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0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산압류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등에 대하여는 그 압류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다만, 선박·항공기·기계장비·자동차를 제외한다.
2. 유가증권
3. 채권
4.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무체재산권)

② 질권이 설정된 동산(선박·항공기·기계장비·자동차를 포함한다)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조서를 그 점유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류조서등본을 현장에서 체납자 또는 입회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조서 끝에 수령자로 하여금 수령의 뜻과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때에는 그 압류조

서의 성명란에 “○○회사 청산인(무한책임사원) ○○○”라고 표시한다.

제41조(압류물건의 보관) ① 압류물건은 세무공무원의 책임하에 분실·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압류재산보관증을 보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보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또는 동물압류로 인한 사육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관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후일 보관료 또는 사육료지급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③ 압류물건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표시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봉인용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과실에 대한 압류) ① 천연과실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 징수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급부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도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원본과 별도로 압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압류물건에 대한 과실의 인도 또는 지급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갑, 을)에 따른다.

제3절 압류

제43조(재산압류시 유의사항)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압류착수 전에 체납된 시세의 완납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압류할 재산은 이를 매각하여 징수할 세금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고통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보관·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가처분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제4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요구) 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함에도 질권자가 해당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따라 질물의 인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물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45조(압류통지) ① 세무공무원이 부동산 등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체납자·채무자·채권자·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관계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갑,을)
2.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
3.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
4.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
5. 가압류·가처분을 받은 재산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갑,을)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중 환급청구권의 지방세환급금 그 밖의 반환금은 관계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6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

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일 전까지 청구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매처분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47조(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및 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②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압류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을 하는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압류등기·등록촉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류등기·압류등록을 할 수 있다.

제48조(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① 세무공무원은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인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압류자동차인도명령서에 따른다.

제49조(부동산의 분할·합병·변경의 등기촉탁) ①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분할·합병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등기촉탁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대위등기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 및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위등기시에는 등록면허세·인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처분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0조(부동산등의 압류효력) ① 자동차·건설기계·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의 압류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시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시세우선권 확인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1조(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신청) ① 체납자의 압류재산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무체재산권의 압류) ① 무체재산권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공동광업권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을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③ 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 또는 등록만료의 광업권을 압류등록촉탁하는 경우에는 광업원부명의대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압류등록촉탁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채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채납자의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관할 관서에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4절 압류의 해제

제54조(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초에 작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압류해제의 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받은 권리자·채무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이 제3자에게 보관을 한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가 직접 재산을 인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해제조서 여백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재산압류 후 가격의 변동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압류재산의 가격이 징수할 금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에는 압류물건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56조(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에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물건의 등기·등록기관과 압류촉탁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압류말소 등기·등록을 할 수 있다.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57조(교부청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에 대하여 시세체납액의 교부를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은 세무공무원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수령후 납입하거나 계좌입금방식에 의거 수입금출납원 관리계좌로 송금받아 납입하고,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민사집행법」 제151조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배당금을 수령한 담당공무원은 즉시 소관과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배당금을 수령하여 정당하게 처리한 후에 배당금 지급처의 배분착오 등으로

배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 수령한 배당금에서 환급금 처리에 준하여 반환하고 체납액정리부·수납소인정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에 우선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당받거나 충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배당받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권리자에게 지방세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58조(참가압류) ①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참가압류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기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 압류기관에 최고하거나 기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시세총액이 압류재산의 예상매각대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중인 체납시세에 대하여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재산을 매각한 후의 배당가능성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배당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절 매각

제59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매각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명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공매공고) ① 공매공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관보·시보·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시청 또는 동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

차를 공매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면적이 토지대장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실황을, 자동차 공매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보를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공매공고의 취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의해 공매공고 또는 취소공고를 하는 때에는 게시와 함께 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61조(공매통지) 공매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체납자·납세 담보물 소유자와 그 재산상의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 및 그 밖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매각예정가격조서) ①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매각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②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감정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보제공에 관한 협약업체에서 평가한 가액을 매각예정가격 결정에 참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평가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매할 물건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고 공매한다. 다만, 구분함으로써 가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분공매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은 실제의 지목, 면적에 따라 산정하되 토지에 정착된 수목·농작물 그 밖에 천연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도 포함한다.

⑥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공매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공매한다.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체감) ① 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3회 공매시부터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씩 체감한 것을 매각예정가격으로 한다.

② 매각예정가격의 체감은 2회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응) ① 공매보증금으로서 무기명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질권설정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채 또는 지방채를 받은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입찰)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거소·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48호서식의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개찰) ①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 별지 제49호서식의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개찰장소·일시에 입찰인 또는 대리인의 면전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제67조(경매) ① 경매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공매하게 할 수 있다.

② 경매방법으로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경매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경매인에게 경매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하게 하고 제2항의 경매조서에 해당 경매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입찰 또는 경매규정)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입찰규정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경매규정을 해당 징수기관과 경매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9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매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각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일부터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공매물 대금납부) 공매물건의 낙찰인 또는 경락인은 별지 제54호서식의 납입서를 첨부하여 그 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낙찰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리) ①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보증금은 압류기관의 세입으로 귀속시킨 후 보증금 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낙찰인 또는 경락인이 매수권리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와 취소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권리이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산 및 무기명유가증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입찰서 또는 매수가격 건

- 적서의 여백에 영수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 2. 세무공무원은 제3자 또는 체납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인도 전에 보관자에 대하여 보관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세무공무원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56호서식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분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권리말소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의 통지의 등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 4. 기명식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기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권리이전의 수속을 시키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압류 및 공매의 사유·매각년월일·신구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는 증명서를 작성하고 그 증권이 있는 것은 이를 첨부하여 명의인을 대리하여 명의개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라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 6. 특허권 그 밖에 무체재산권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한다.

제73조(귀속재산의 권리이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귀속재산매수대금 미불잔액을 납입하면 즉시 재산의 표시·공매년월일·공매가격·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내용을 별지 제58호서식의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따라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귀속재산 매수자의 자격증명) 귀속재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기일 전일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청산

제75조(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즉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78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76조(배분계산서) 체납처분을 종료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61호서식의 배분계산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1. 회사의 청산인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는 주된 납세자의 것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 2. 압류채권의 일부징수 또는 압류물건의 일부공매 등의 경우에는 체납처분 종결 후에 배분계산서를 작성

한다.

3. 채납처분의 분할인계를 한 경우에는 인계·인수 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채납금액의 기재는 인계 관서에서는 인계전의 총채납액을 기재하며 “○○원 중 ○○원을 ○○관서에 인계, 차인○○원”이라 기재하고 인수관서에 있어서는 인수액만 기재한다.

4. 채납처분을 분할촉탁한 경우에는 수탁관서의 통지를 받아 종합하여 촉탁관서에서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제77조(매각잔여금의 교부) 채납자 또는 채권자에게 매각잔여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취인이 대리인·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일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78조(공탁)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61호서식,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제8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제79조(공매대행의뢰) ① 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납자별 집계표와 공매대상재산의 매건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공매대행의뢰서(별지 제62호서식)
2. 압류조서사본 또는 압류등기필증사본
3. 그 밖에 참고서류

③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공매요건의 불비사항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완비한 후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80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세무공무원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

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별지 제6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79조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하기에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명되어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인수거부내용을 기록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제81조(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를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참가를 제한해야 하는 자의 명단을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중지조치를 하고 후에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3. 체납처분을 유예(공매처분유보 포함)한 경우
4.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② 체납자의 현금납부로 공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때에 그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함께 징수한 후에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공매중지 사유가 해소되어 공매절차의 계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매재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 공매절차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공매대행 진행상황의 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매공고 : 공매공고를 한 때
2. 공매중지 : 공매를 중지한 때
3. 매각결정 : 매수인에게 매각결정통지를 한 때
4. 매각결정취소 : 매각결정을 취소한 때
5. 매각대금 등의 납입 : 공매대금을 수령한 때

②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공매진행상황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공매대금의 인수·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 즉시 수입금출납 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징수부서의 장 공용계좌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상황을 수시확인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계약보증금
3. 공매대행금
4. 그 밖에 공매에 따른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 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85조(매각대금의 배분) ①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공매대금을 조례 제38조에 따라 배분하되, 매수대금완납통지서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에 공매대금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분계산시에는 착오가 없도록 관련 채권자·배분순위 및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여 제76조에 따른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비는 세외수입으로서 그 밖에 경상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금 배분을 완료한 후 공매대금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에 의하여 배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정정하여 정당한 배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6조(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 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세출예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협지사항 등) 세무공무원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업무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8조(회생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으로 체납처분이 정지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바, 같은 기간내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9절 결손처분

제89조(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전산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지에 따라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복명서 또는 읍·면·동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체납자의 행방에 대한 탐문·추적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따른 조사
2. 동업자 및 거래처에 따른 조사
3. 주식이동상황에 따른 주주조사
4. 취학아동·병적 및 민방위 관계에 따른 추적조사
5. 법인의 임원에 대한 조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시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0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자 및 부과철회자에 대하여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및 결손처분 취소 또는 부과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등기 또는 등록관서에 직접 출장하여 관계공부를 열람·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출장하여 조사한다.
2. 체납자가 거주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3. 사업장 재산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장 수색조사

나. 사업장 잔여재산조사

다. 점포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유무 조사

라.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채권, 거래보증금 등에 대한 조사

4.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 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양도·양수했는지 여부

나. 양도담보 재산유무

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를 중심으로 은닉재산 탐문조사

5. 그 밖에 금융회사에 예금·적금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다만, 결산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거래실적이 있는 금융회사 점포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시세가 10만원(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1조(결손처분의 결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결손처분표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2조(결손처분의 취소) 연도폐쇄를 한 후에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징수부 이월액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월액에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이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가산금을 가산하여 기재한다.

제93조(부당한 결손처분 금지) 체납처분 담당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징수가능한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행위
2. 계속사업자를 고의적으로 결손처분하는 행위
3. 체납정리실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일단 결손처분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행위

제94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①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6월마다 계속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사후관리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압류통지를 할 때에는 통지서 비고란에 결손처분시기·결손처분취소의 시기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은닉재산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5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갖추어 회의개최 3일전 까지 위원들에게 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위원은 각 안건별 심사결정 사항을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7조(도지사 의견조회) ① 위원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어 지방세관계법령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세관계법령에 대한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첨부)한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내용
2. 사실관계 및 현황
3. 관련법규와 쟁점사항
4. 시장의 의견

제98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9조(과세표준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서식목록

연번	서식번호	관련규정	서 식 명
1	1	규칙 제6조제1항	통상우편 송달부
2	2	규칙 제6조제2항	송달부(직접교부)
3	3	규칙 제7조	우편물 반송접수대장
4	4	규칙 제7조	송달불능부
5	5	규칙 제10조제1항	(징수·감액·결손)결정결의서
6	6	규칙 제10조제2항	세입(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7	7	규칙 제10조제2항	세입(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8	8	규칙 제10조제2항	수납부
9	9	규칙 제10조제4항	징수부
10	10	규칙 제14조제3항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신고·접수대장
11	11	규칙 제18조제1항	OCR 미소인 처리 내역
12	12	규칙 제19조제3항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13	13	규칙 제19조제3항	이월 체납액 정리부
14	14	규칙 제20조제1항	지방세 부과 취소(경정) 결정서
15	15	규칙 제21조제1항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16	16	규칙 제22조	지방세체납정리표(갑,을)
17	17	규칙 제23조	징수촉(수)탁 정리부
18	18	규칙 제27조제2항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19	19	규칙 제28조제4항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지급 동의서
20	20	규칙 제29조제2항	지방세환급금총당결의서
21	21	규칙 제33조제1항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정리부
22	22	규칙 제34조제1항	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신청서

연번	서식번호	관련규정	서 식 명
23	23	규칙 제34조제2항	납세담보에 따른 지방세충당통지서
24	24	규칙 제35조	납세담보관리대장
25	25	규칙 제38조	수색조서
26	26	규칙 제40조제1항	재산압류 대장
27	27	규칙 제41조제1항	압류재산 보관증
28	28	규칙 제41조제3항	봉인용지(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29	29	규칙 제42조제4항	천연(법정)과실 인도요구(갑,을)
30	30	규칙 제44조제1항	질물인도요구서
31	31	규칙 제45조제1항	채권압류통지서(갑,을)
32	32	규칙 제45조제1항	재산압류통지서
33	33	규칙 제45조제1항	가압류 등의 재산압류통지서(갑,을)
34	34	규칙 제47조제1항	부동산 등의 압류 등기 촉탁서
35	35	규칙 제47조제2항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 압류(변경·말소)등록촉탁서
36	36	규칙 제48조제2항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37	37	규칙 제49조제1항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 대위등기촉탁서
38	38	규칙 제49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대위등기촉탁서
39	39	규칙 제51조제1항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40	40	규칙 제52조제1항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41	41	규칙 제56조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42	42	규칙 제57조제1항	교부청구서
43	43	규칙 제59조	매각예정가격조서
44	44	규칙 제60조	압류부동산(동산) 공매 공고
45	45	규칙 제61조	공매통지서
46	46	규칙 제62조제3항	평가감정서
47	47	규칙 제64조제1항	질권설정서
48	48	규칙 제65조	입찰서

연번	서식번호	관련규정	서 식 명
49	49	규칙 제66조제1항	입찰조서
50	50	규칙 제67조제2항	경매조서
51	51	규칙 제68조	입찰규정
52	52	규칙 제68조	경매규정
53	53	규칙 제69조제1항	매각결정통지서
54	54	규칙 제70조	납입서
55	55	규칙 제72조제2항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56	56	규칙 제72조제2항	등기청구서
57	57	규칙 제72조제2항	광업권 이전등록촉탁
58	58	규칙 제73조	귀속재산매각 통지서
59	59	규칙 제76조	배분계산서
60	60	규칙 제77조	영수증
61	61	규칙 제78조	배분금전예탁통지서
62	62	규칙 제79조	공매대행의뢰서
63	63	규칙 제80조제2항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64	64	규칙 제81조	공매대행통지서
65	65	규칙 제81	공매참가제한 대상자 통지
66	66	규칙 제82조제1항	공매대행중지 요구서
67	67	규칙 제91조	결손처분표
68	68	규칙 제9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69	69	규칙 제9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결정서
70	70	규칙 제96조	심사결과통보서
71	71	규칙 제9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72	72	규칙 제98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73	73	규칙 제99조	지방세 과표 심의결과 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

보통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직접교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출력순번	납세자번호 납부세액	우편번호 주소 과세물건	연락처	수령인 관계	서명	수령 일자	미교부 사유
누 계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 목	년도 / 기분	납 세 의 무 자		송 달 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 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 (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 송 달			공시 송달 일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앞면)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right: 20px;"> <input type="checkbox"/> 징수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2 style="margin: 0;">결정결의서</h2> </div> </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계장		납액 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납세인원	구 동 외 번지명				
적용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뒷 면)

내 역 서							
구분 등	과세표준	세율	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 세	가산금		

※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호서식

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결 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년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계장	담당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호서식

세입(징수·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감액·결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세 / 세목구분 [] / 시군구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 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수납구분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서식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한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세															
○○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0호서식

우편 · 모사전송 · 전자문서 신고접수대장

접수 번호	신고 일자	납세의무자			신고 종류	세목	접수자	접수거부		신고납부 처리		결재		
		성명	전화 번호	주소				통지 방법	거부 사유	인수자	납부서 발송일	담당자	계장	과장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1호서식

OCR 미소인 처리 내역
(수납일자 : ~)

세 목 미소인사유	연도	월	등	과세번호 수납기관	기분	파일일련번호 OCR판독마감일	수납일 소인일	납기	본 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방위세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수납금액	납세의무자	처리결과

※ 공동시설세로 수납되어 오류처리된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로 처리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 별지 제12호서식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비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13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동)

과세 번호	세 목	본 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증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 납 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구세 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5호서식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세액(분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지방세 체납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 호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	연 도	납 기	과세번호	독 측		체납세액						합 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6호서식

(뒷 면)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계장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 거 확 인			재 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극빈자 확인			재조사 확인	
1. 가옥 : 자가, 셋방, 세가 2. 생활상황 : 극빈, 구호대상 3. 기 타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7호서식

징수촉(수)탁 정리부

결재			촉탁(수탁) 연월일	수탁(촉탁) 기관	체납세							납세의무자		결과	완결 일자
담당자	계장	과장			년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본세	가산금	계	주소	성명		

- (주) 1. 징수상황 수납상황, 인수불능상황 기타 촉탁징수 내역을 기입한다.
 2. 제17호서식 부표에 의한 집계표를 첨부한다.
 3. 촉탁분과 수탁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7호서식 부표

징수촉탁내용				징수수탁(인수) 내용					
연월일	촉탁액 ①	수납액 ②	미수납액 ① - ②	연월일	수탁액 ③	징수액 ④	송금액 ⑤	미징수액 ③ - ④	미송금액 ④ - ⑤
	본세가산금	본세가산금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8호서식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 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 재			지급필 통지사항					
	년도	책호 기분	세 목 번호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 당 자	담 당 장	과 장	조 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총 당	구좌 경정	명령 번호	지 급 명령액	담 당 자	계 장	과 장	일 자	수 령 자	대 조 자 인
				계	본세	가산 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	계																										
연	도																										
총	누																										

구	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 당 액	구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 송 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및통지액 ④	차인미지급액 ③ - ④	결 재		
										담 당 자	담 당	과 장
전	월	까지	누	계								
당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
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9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년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0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계 장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세 입 항 목	구 분	세 입 연 도	세 입 과 목				환 급 금 총 액	과 오 납 연 월 일	환 급 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 분	세 입 연 도	세 입 과 목				미 납 총 액	총 당 액	납 세 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총당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1호서식

고지서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정리부

당초 납부기한				징수유예 결정일			징수유예 기한	1차			2차			
과세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목	금 액	조 사 사 항						조 치 항	결 재		
	주 소				1 차			2 차				담 당 자	계 장	과 장
					월일	조사결과	조사자	월일	조사결과	조사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2호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납세담보	담보물건									
	소재지									
	소유자							전화번호		
	담보금액									
	담보제공일자									
총 당 내 역	연도/ 기분(월)	세 목							납 세 의 무 자	
		과세 번호	계	OO세	OO세	OO세	OO세	가산금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본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건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납세자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지방세충당 통지

지방세환급금 지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담보	담보물건									
	소재지									
	소유자									
	담보금액									
	담보제공일자									
충당내역	연도/ 기분 (월)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 번호	계	00세	00세	00세	00세	가산금	주 소	성 명
	충당후 (미수납액) (충당잔액)							금 원		
	충당일자	년 월 일	충당잔액 처리내역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4호서식

납세담보 관리대장

일련번호															
담보물건 제공자			담 보 물 건					관 련 시 세				사후처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종류	금액	소재지	소유자	제공일자	세목	금액	연도 / 기분	납세의무자	해제	총당	년월일	

	점검일 자	점검자	점검내용	결 재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내용	결 재		
				담당자	계 장	과 장				담당자	담당	과 장
사후 관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5호서식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3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연도	납부기한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계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OO 시·군·구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주소 또는 거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등본을 교부할 때에 이 조서의 여백에 수령의 뜻을 기재하여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령증에 대응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6호서식

체납자 재산압류 대장

체납자		체납세액						압류물건		압류 년월일	압류통지 서송달일	압류등기 등록번호	압류 해제일자	결재			
주소	성명	년도	기분	세목	세액	가산금	계	소재지	물건					담당자	계장	과장	

※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 별지 제27호서식

압류재산 보관증

압 류 물 건	수 량	비 고

위에 열거한 지방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____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보관자	주 소					
	성 명	(인)	전화		주민등록번호	

※ 수량란은 수량을 기재한 후 투명한 테이프를 부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8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성명

년 월 일 압류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0mm×70mm(특급용지 100g/㎡)

■ 별지 제29호서식(갑)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천연과실 인도요구

○○세 체납처분으로 압류중인 ○○시(도) ○○구(시·군) ○○동(리) 번지
호 소재 ○○재산에서 압류 후 발생한 천연과실 ○○을 년 월 일까지 ○○구(시·군)청
○○과 세무공무원 ○○○에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9호서식(을)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법정과실 인도요구**

○○세 체납처분으로 압류중인 ○○시(도) ○○구(시·군) ○○동(리) 번지 소재 ○○재산(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열거)에서 압류 후 발생한 법정과실 ○○○ 금 ○○원(W)을 년 월 일까지 ○○구(시·군)청 ○○과 세무공무원 ○○○ 에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통지서를 받은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 지급은 무효가 되고, 귀하가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0호서식

질물인도 요구서

질 권 자	성명					
	주소					
체 납 자	성명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인도연월일						
인도재산의 표시						
인도를 요구하는 이유						
<p>「국세징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 시장·군수·구청장 (인)</p> <p style="margin-left: 100px;">(질권자) 귀하</p>						
<p>[참고] 만일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을 압류합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1호서식(갑)

채권압류통지서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채권자 (채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p>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당서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p> <p>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1호서식(을)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자 (채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무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p>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2호서식

재산압류통지서							
성 명							
주 소							
채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연월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p>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군수·구청장 (인)</p>							
<p>※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3호서식(갑)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재산의 표시							
가압류(가처분) 당시의 소유자	성 명						
	주 소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신청인)	성 명						
	주 소						
가압류(가처분)결정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3호서식(을)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4호서식

문 서 번 호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등기(등록)의 목적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등기(등록)권리자					
등기(등록)의무자	성 명	oo 시·도 (처분청 : oo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oo 시장·군수·구청장 (인)					
부 속 서 류		압류등기촉탁서부분 및 압류조서 각1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 사
		기입			대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5호서식

문서번호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 변경·말소 등록촉탁서			
재산의 표시					
사용의 본거지					
재산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권리(의무)자					
등록의무(권리)자	성명	○○ 시도 (처분청 : ○○ 시장·군수·구청장)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원인과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변경)			
등록의 목적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 말소)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관할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시장·군수·구청장 (인)					
부속서류		압류(해제)촉탁서부분 및 압류(해제)조서 각1통			
접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 사	
		기입		대 조 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6호서식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인도하여야할재산의표시				
인 도 기 일	년	월	일 까지	
인 도 장 소				
인 도 를 명 하 는 이 유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37호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문서번호</td> </tr> <tr> <td style="height: 20px;"> </td> </tr> </table>	문서번호		<p>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p>				
문서번호							
부동산의 표시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 월 일	지방세체납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분의)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oo 시장·군수·구청장 (인)					
		성명					
첨부서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도면(건물) 2. 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3. 압류조서등본 통 4. 촉탁서 부분 통		토지대장 등본(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건물) 1부				
접수	년 월 일	접수	조사				
	제 호	기입	대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8호서식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의 인	성 명						
	등 록 번 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국세채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분의)					
지방법원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oo 시장·군수·구청장 (인) 성명					
부 속 서 류	촉탁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압류조서등본 통 2. 촉탁서 부분 통			토지대장 등본 1부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9호서식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통 반)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사 용 또 는 수 익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의 종류·표시						
사용 또는 수익방법						
<p>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40호서식

문서번호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채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무채재산권의 표시			
등기(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p>지방법원 등기소 귀중</p>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촉탁공무원 oo 시장·군수·구청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p>			
부속서류	압류(해제)촉탁서부분 및 압류(해제)조서 각1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기입	대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41호서식

문 서 번 호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등기(등록)원인과 년 월 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 록 번 호		
	주소				
등기(등록)의무자		oo 시장·군수·구청장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oo 시장·군수·구청장 (인) 성 명:					
부 속 서 류		압류해제촉탁서부분 및 압류해제조서 각1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 사	
		기입		대 조 확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2호서식

교 부 청 구 서

문 서 번 호		사 건 번 호	
체 납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교 부 청 구 금 액		금	원 정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세목	지방세			비고
			본세	가산금	합계	
배 당 액 입 금 의 뢰 계 좌	개설은행	예·적금명칭				
	계좌번호					
	사용인감	예금명의인				

1. 「지방세기본법」 제101조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 받고자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2. 「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귀하

※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경우는 비고란에 "당해 세금"이라고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43호서식

매각예정가격조서

번 호	체 납 자		공매재산 의 표 시	예정가격 (견적가격)	산출근거
	주 소	성 명			

(주) 산출근거 평가상 참고할 사항을 자세히 기입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4호서식

(앞 면)

○○시·도 ○○ 시·군 공고 제 호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합니다.

년 월 일

○○도 ○○ 시장·군수

1. ○○도 공고 압류재산 표시

관리 번호	재산의 명칭	소재지	용도 (품질)	종별	수량	매각 예정가격	기타

2. 일괄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공매회차	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매각일시	공고기간
1			
2			
3			
4			
5			
6			

3. 공매장소 :

4. 입찰 결과발표 :

5. 공매 입찰 방법 :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뒷 면)

6.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는 다음 사항 전부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 ①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
- ② 최고액 입찰자는 입찰결과 발표 3일 이내 본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③ 입찰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입찰하여 최고액 입찰자로 선정될 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④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매수 제한자가 아닐 것
- ⑤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나 요건을 구비한 자일 것

나.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최고가 입찰자선정(단독입찰 가능)

7. 대금납부방법 및 기한

- ①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매수대금을 구청에 납부하여야 함
- ②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액 2,000만원이상은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낙찰가액 2,000만원미만은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 최고절차를 거쳐 입찰보증금을 구청에 귀속 조치 함

9.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비용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10. 공매의 중지

-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지방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해야 함

11. 기타사항

- ①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 기준임
- ② 공매물건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해야 함
- ③ 매각물건중 농지(전·답·과수원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 조사
- ④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사전에 직접 조사
- ⑤ 본 공고문상의 내용외에 준수할 사항은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함
- ⑥ 입찰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은 시, 구·군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5호서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문서번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20px; margin-top: 5px;"></div>		<h2 style="margin: 0;">공매통지서</h2>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연월일		년 월 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회차	입찰일시(기간)				매각예정가격		
	기일입찰		기간입찰				
1 회차							
2 회차							
3 회차							
4 회차							
5 회차							
6 회차							
수의계약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체납세액			비고
				세액	가산금	합계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 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6호서식

평 가 감 정 서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아래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인 주소 :

성명 :

(인)

번호	재산의 표시	평가금액	적요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47호서식

질 권 설 정 서

수입인지

□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65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하는바 본인 (또는 입찰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도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질권설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oo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48호서식

입찰서

번 호	체 납 자		공매재산의 표 시	입찰가격	입찰보증금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체납처분 공매공고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붙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성 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49호서식

입찰 조 서

(제 회)

납 세 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시장 군수 구청장	세무 과장	재산명칭 또는 번호	매각예정 가격	입찰가격	입찰자 성명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낙찰대금 납부월일
작성자		직			성명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입찰가격의 상부에 주무자가 날인하여 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 2.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매공고에 제기한 번호마다 별지로 할 것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0호서식

경매조서

체납자 에 대한 압류재산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에서
경매에 붙인바 아래와 같음.

번호	공매자산 품목	최고경매 신청가격	적요	경락인 주소성명	체납자 주소성명
1	○○	원	경낙		
2			견적가격에 미달		
3		원	경낙최고신청자 2인이 상인 고로 추천으로 결 정		
4					
5					
6					
7					
8					
9					

 년 월 일

 ○○ 시·군·구 직 성명 : (인)

 경매인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51호서식

입찰 규정 (표지)

제1조 입찰서는 ○○ 시·도 시세기본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봉합하고 입찰보증금을 붙여 개찰 시각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지방채로서 보증금을 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 시·도 시세기본규
 칙 별지 제49호서식의 질권설정서와 지방채등록부의 등록완료통지서를
 붙여야 한다.

제3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총당한다.

제4조 낙찰자에게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낙찰
 되지 아니한 입찰 보증금은 입찰서의 여백에 입찰자의 영수인을 받고
 즉석에서 환급하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물건중 1개번호 내지 수개번호를 선발하여 입찰함은 무방하나
 1개번호내의 기부를 분리하여 입찰할 수 없다.

제6조 개찰은 게시한 장소, 일자에 입찰인 면전에서 한다. 다만, 입찰인
 또는 대리인이 개찰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입회없이 개찰한
 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회하지 않음을 이유로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7조 대리인으로서 입찰 또는 개찰에 입회시킬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52호서식

경매 규정 (표)

○○ 시·군·구

제1조 공매인은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조 경매는 그 사건을 고지하고 각 경매물에 대하여 경매의 신청을 최고하는 때 시작하여 최고경매의 신청자에게 대하여 경락을 선언함으로써 종료한다.

제3조 경락은 최고가격 경매의 신청을 3회 이상하여도 그 이상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이를 경정한다. 동일 최고경매 신청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최초의 신청자를 경락자로 하고 신청이 동시일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경매가격이 견적가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 신청은 무효로 하고 매각을 중지한다.

제4조 사정에 의하여 공매물건의 매각을 중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경매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53호서식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소 또는 거소			
매 각 재 산 의 표 시				
매 각 금 액				
매각금액납부연월일		년 월 일		
<p>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군수·구청장 (인)</p> <p>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54호서식

납 입 서

일금

원정

내 역

- 1. 공매물건 , 금 원
- 2. 공매물건 , 금 원

위의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체납자(성명기재)의 경매물건 매수자 성명 : (인)

체납자(성명기재)의 공매물건 경매인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56호서식

등 기 청 구 서						처리기간
						1 일
등기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 반)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반)	
	주소또는거소					
재산의 표시						
매각결정 연월일		년 월 일				
대금납부 연월일		년 월 일				
납부금액		금			원정	
취 득 세		금			원정	
<p>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 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oo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붙임 : 취득세 금 원정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7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광업권이전등록 촉탁

아래와 같이 광업권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구 소 재 지	
등 록 번 호	
등 록 원 인 과 그 일 자	년 월 일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 결정
등 록 목 록	광업권이전
등록권리자 주소 성명	
등록의무자 주소 성명	
등 록 세	금 원
첨 부 서 류	매각결정통지서, 공매대금, 영수증, 등록권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58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매각 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매수인	주 소	
	성 명	
계 약 일 자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일 자		
공 매 일 자		
공 매 가 격		
공매에 의한 매수인	주 소	
	성 명	
귀속재산 매수대금 부불 잔액금		원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59호서식

배 분 계 산 서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거 소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매 각 재 산 의 표 시						
압류에 관계되는국세의금액						
채 권 자						
성 명	주 소 또 는 거 소			채 권 금 액		
배분순위 및 금액						
순 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금 액	교 부 일	비 고
기 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0호서식

영 수 증

시·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직 성명 귀하

일금 원정

지방세체납처분 잔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주소:

성 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1호서식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채 권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채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 분 금 액	금	원정		
예 탁 장 소				
예 탁 일 자	년	월	일	
<p>위와 같이 예탁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84조제2항 및 00시·도 시세기본규칙 제00조제0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인)</p>				
<p>구비서류: 배분계산서등본 통</p>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2호서식

<input type="checkbox"/> 공 매 <input type="checkbox"/> 수익계약								대행의뢰서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또는 거 소 (본 점)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의 종 류			종 목					
매 각 재 산 의 표 시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계			
<p style="text-align: center;">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1항 또는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 또는 수익계약에 의한 매각을 의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장·군수·구청장 (인)</p> <p>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귀중</p>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국제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류한 재산의 내용							
소재지						종 류	
수 량						품 질	
압류연월일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목	지방세			비고
				세액	가산금	계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4호서식

공매대행통지서				
성 명				
상 호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연 월 일				
공매대행기관				
명칭(지점)		전화번호		
소 재 지				
<p>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5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공매참가제한 대상자 통지**

위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6호서식

공매대행 중지 요구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업장			

2. 공매중지 대상재산

재산소재지	종류	품질	수량	비고

3. 관련 체납액

4. 공매 중지 사유 :

위와 같은 사유로 공매대행의 중지를 요구하오니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7호서식(갑)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계 장	과 장	국 장					
년 월 일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확인자 (과 장) :			

- ※ ①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6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 ② 법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7호서식(갑)

(뒷 면)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7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계 장	과 장	국 장				
				년 월 일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주 소	본 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68호서식

의안번호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장 또는 주소						
	상호						
통지기관							
청구대상	과세대상 물건						
	통지사유 및 근거						
	세액		과세표준		세목		
청구경위	통지 받은 날			청구취지			
	청구서 접수일						
	보정요구일			보정이행일			
	처리기한			1차연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서(안)							
<p>위 청구(법)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어 결정서(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oo 시·도지사 (인)</p> <p>oo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9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결정서

의안번호	청구인	세목	세액	처분청	심사결정	
					요구의견	의결
년 월 일	위 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0호서식

심 사 결 과 통 보 서

의안번호	청구인	처분청	요구안	결정

()호로 심사요구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건이 위와 같이 심사의결 되었기에
「00시·도 시세기본규칙」 제00조제00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00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00 시·도 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71호서식

의안번호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처분청							
당초 결정 내용	연도·기분		세 목	과세 표준		세액	
	고지일자						
이의 신청 경위	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날			보정요구일			
	이의신청일			보정이행일			
이의신청결정(안)		(결정안 별첨)		결정이유		별첨	
<p>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으므로 이의신청 경위와 이의신청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시·도지사 (인)</p> <p>○○ 시·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72호서식

의안번호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처분청							
당초 결정 내용	연도·기분		세목		과세 표준		세액
	고지일자						
이의 신청 (과세 전적부 심사) 결정 경위	처분 통지를 받은날			보정요구일			보정이행일
	시·군·구 세	이 의 신 청 일			결정서수령일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일			결정서수령일		
	결정구분	이 의 신 청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결정(안)		(결정안 별첨)			심사청구일		
<p>위 청구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경위와 심사청구결정(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시·도지사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시·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p>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73호서식

지방세 과표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결과	
기타의견 (소수의견)							
참석위원	직위	성명	서명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과 - (. .)호로 심의 요청한 지방세 과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〇〇시·도 시세기본규칙**」 제00조제0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〇〇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〇〇 시·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76호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도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됨에 따라
- 나.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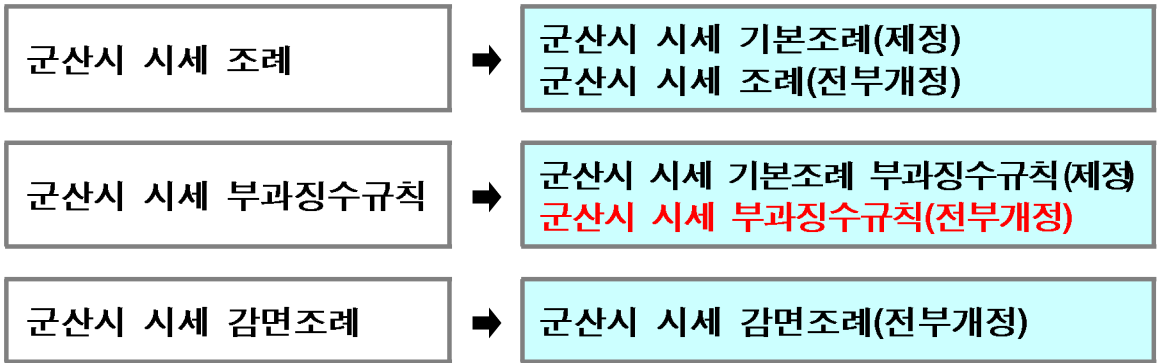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중 총칙분야는 지방

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

현행 (3개 자치법규)

개정 (5개 자치법규)



나.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부과징수 규정 재편성

구분	현행 : 8개 세목	개정 : 5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재산세 ② 도시계획세	① 재산세
유사세목통합	③ 자동차세 ④ 주행세	② 자동차세
현행유지	⑤ 주민세 ⑥ 지방소득세	③ 주민세 ④ 지방소득세
	⑦ 담배소비세	⑤ 담배소비세
폐지	⑧ 도축세	폐지

다. 현행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총 29개 조문)하고,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라. 지방세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최광식 (전화 063-450-4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균등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장 건축물로 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처리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9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절 종업원분

제1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02조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지방소득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

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0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세

제16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과세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0조(분할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2. 2월부터 3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3. 4월부터 6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4.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5.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공제하지 않는다.

제2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21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3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자동차의 사용분거지가 변경된 경우
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
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

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제2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체납처분) 법 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하는 경우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4호 서식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0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
부터 적용한다.

군산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서식목록

연번	서식번호	관련규정	서 식 명
1	1	규칙 제2조제1항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2	2	규칙 제3조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3	3	규칙 제6조제3항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4	4	규칙 제7조제1항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5	5	규칙 제7조제3항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6	6	규칙 제8조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
7	7	규칙 제10조제1항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8	8	규칙 제10조제1항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9	9	규칙 제10조제1항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0	10	규칙 제11조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11	11	규칙 제12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12	12	규칙 제12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13	13	규칙 제12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14	14	규칙 제13조제1항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15	15	규칙 제14조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16	16	규칙 제16조제1항	건축물조사표
17	17	규칙 제16조제1항	주택조사표
18	18	규칙 제16조제1항	선박조사표
19	19	규칙 제16조제1항	항공기조사표
20	20	규칙 제17조제1항	재산세 비과세 관리대장
21	21	규칙 제17조제2항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
22	22	규칙 제18조제1항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연번	서식번호	관련규정	서 식 명
23	23	규칙 제18조제2항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24	24	규칙 제19조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25	25	규칙 제20조제1항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26	26	규칙 제20조제2항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27	27	규칙 제21조제2항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28	28	규칙 제24조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29	29	규칙 제26조제1항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30	30	규칙 제27조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 별지 제1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년도 월분

(○○동)

접수 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 량	세 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계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성명(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계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3호서식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일련 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비과세·감면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계 장	과장

210mm × 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4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 장	과 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

(○○동)

접수 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계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미색모조 80g/㎡)

■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 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7호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납세번호	납부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총 과세표준	안분율	지방소득세	합계세액	수납금액
주 소		부과일자		사 업 기 간		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가산세	납기일자	수 납 일
법인등록번호	현 소 재 지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8호서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소득세	세율	지방소득세	납부일자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계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9호서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일련번호	납세번호	납부구분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귀속연도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합계	수납금액	수납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고지 주소			고지 주소지					
	양도물건					부과일	납기일	자료구분	비고		
합계	건 수 : 건		지방소득세 :		가산세:		합 계 :		수납금액 합계 :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0호서식

일련번호	
------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의무자 대장

특별징수의무자 주소					기관명(사업장명)																		
월별	납부일자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배당)소득				보통징수분						결재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인원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증감	조사월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	결정일자	납부일자	담당자	계장	과장
이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정상여																							
기타																							
계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1호서식

지방소득세(법인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접수 일자	법인명	주 소		법인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담당자	계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계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3호서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소득세	관 할 세무서	세 율	본세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계 장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 장	과 장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5호서식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계 장	과 장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건 축 물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자			현 소유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구 분	소 재 지		구 조	용 도	신축년도	건축물 연면적	비 고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세대장								
공 부								
	구 축 물		부 대 설 비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공 부								
현 황								
비 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면)

건축물조사표

건축물실측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710px; width: 100%;"></div>		

■ 별지 제17호 서식

(앞 면)

주 택 조 사 표

소유자	전 소유자			현 소유자			이전일자	이전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구분	소재지		구조	용도	신축년도	주택 연면적	비고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세대장								
공부								
	구축물		부대설비		조사년월일			
공부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성명 (서명또는 인)		
현황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비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주 택 조 사 표

주 택 실 측 도	면적산출	참고사항
2mm 그래프용지 사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18호서식

선 박 조 사 표

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선박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건조 년도	선박 번호	총톤수
이전일자						
이전사유						
조사년월일 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직 성명 (서명또는 인)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19호 서식

항 공 기 조 사 표

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현소유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 화	주 소		
항공기 현황	소 재 지	종 류	용 도	제작 년도	등록 번호	등록일자
	내용연수	제작회사		기 종	최대이륙중량	
이전일자						
이전사유						
<p>조사년월일</p> <p>조사자 직 성명 (서명또는 인)</p> <p>직 성명 (서명또는 인)</p>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0호서식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읍·면·동)

접수번호	토지면적	성명(법인명)	상 호	납세주소	과표세준	비과세		사 후 관 리 내 용								결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1차	확인내용	4차	확인내용	7차	확인내용	10차	확인내용	담당자	계 장	과 장
건물면적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합 계	3차	확인내용	6차	확인내용	9차	확인내용	12차	확인내용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1호서식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 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고내용

재산의 종류	재산의 소재지	지적,면적, 톤수 등록번호	공시 지가	공용,공익 사업의 폐지일자	폐지 사유	지목 구조	사용자	
							주소	기관명

「시세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재산세 공용·공익사업용 재산 폐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m²)

담당자	계 장	과 장

신청 연월일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재산세부과내역						물납 신청내역					물납 허가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목	과세 번호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세액	당초 납부 세액	신청세액	종류	소재지	면적		물납부동산 평가가액	통지일	부동산등기 서류제출일	등기일 (물납일)
		주소지	과세 대상									토지	건물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3호서식

담당자	계 장	과 장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

(단위 : 원)

신청 연월일	납세의무자 (신청인) 내역		재산세부과내역						분납 신청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세목	과세대상	과세번호	물건지	과세표준	부과세액	납기내 세액	분납세액	분납기한

※ 작성요령 : 과세대상(건축물, 주택, 토지 중 선택 기재), 당초 납부세액(일부납부 세액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4호서식

담당자	계장	과장

납세관리인 관리대장

(00 동)

연번	물건소재지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			신고사항		직권지정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신고일	신고사유	통지일	처리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① 성명 (대표자)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③ 상호 (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소재지)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⑦ 전자우편주소	

신 고 내 용

연세액 신고 분할납부 신고

⑧ 자동차번호	⑨ 차량제원 - 승용차(배기량) - 승합차(정원) - 화물차(적재정량)	⑩ 연세액	⑪ 제 1 기분 분할납부세액	⑫ 제 2 기분 분할납부세액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또는 분할납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접수연월일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내용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작성요령 신고인(납세자)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⑤ 주소(소재지) : 개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신고내용

- ⑧ 자동차번호 :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 차량제원 :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제원(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정원, 화물차는 적재적량)을 기재합니다.
- ⑩ ~ ⑫ : 과세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를 신고인을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은 납세자를 말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무효가 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서명 또는 날인이 없거나 위임장이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기 타

- 자동차세 분할납부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군구 ○○과(전화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시·군)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주 소		자동차번호	연세액	제1기분		제2기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납부 세액	납부일	납부 세액	납부일	담당자	계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7호서식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

〇〇년도 〇〇월분

(〇〇 시·군)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주 소		자동차번호	연세액	10% 공제	납부세액	납부일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담당자	계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m²)

■ 별지 제28호서식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

○○년도 ○○월분

(○○동)

접수 번호	신고일	성명(법인명)	주 소		자동차번호	근거법령	신고(직권) 비과세	비과세 사유	비과세 세액	결 재		
			전화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계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9호서식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동)

접수 번호	납 세 의 무 자					과 세 표 준			수 입 신 고 수리일	주행세 신 고 납부일	주행세 신고일	주행세 납부일	송금일	결 재		
	주소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계	취발유	경유						담당자	계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0호서식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동)

과세 번호	성 명	주 소		교통·에너지· 환경세액	관 할 세무서	세 율	본세	가산세	계	결 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계 장	과 장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 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m²)

공 고 안

군산시 공고 제2010-1579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널리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개 정 이 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함에 있어 불법쓰레기봉투 제작·유통 방지를 위한 물류시스템 도입과 재사용봉투 제작 및 소매점 이익조정을 통한 종량제 봉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 요 내 용

가. 제13조(쓰레기봉투의 제작)

▶ 제2항 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산시 휘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홍보문구 게재와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나. 제13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작)

▶ 제1항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

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엷은 보라색으로 제작한다.

▶ 제2항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항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 제4항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

▶ 제5항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부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제2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 제2항 “보관시설 또는 용기” 를 “보관시설 및 용기” 로 한다.

라. 별표3(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 재사용 종량제봉투 10, 20, 30리터 신설

마. 별표8(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 쓰레기봉투 판매이익을 0.09에서 0.1로 조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10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위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 군산시청 청소과
(전화: 063-450-6168, FAX: 063-452-816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청소과 청소행정계(063-450-61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을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으로,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을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쓰레기 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영제2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은 법”을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쓰레기 봉투 종류 및 재질)”을 “(종량제 봉투 종류 및 재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을 “(종량제 봉투의 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산시 휘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제재와 뒷면에 상업광고를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각각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7까지로 하고, 제1

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옅은 보라색으로 제작한다.
-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10리터,20리터,3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 ④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
- ⑤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중전의 제13조의2)의 제목“(쓰레기봉투의 가격결정)”을“(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3조의5(중전의 제13조의4)제3항 중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종량제 봉투판매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마대 및 납부필증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14조의4제1호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묶어서 읍면동에 ”을 “묶어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및 읍면동장은”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보관시설 및 용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나목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종량제 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을 “1명당 매월 8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쓰레기봉투,마대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를 “(종량제 봉투,마대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판매소는 ”를 “종량제 봉투판매소는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95.11.10, 2002.12.31>

쓰레기 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11조제3항 관련)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cm) [(가로×세로+높이×폭(묶는부분))]	호칭두께 (mm)
일 반 용	5	26 × 46.5 + 10.0 × 6.0	0.025
일 반 용 공 공 용	10	33 × 56.5 + 12.0 × 7.0	0.025
일 반 용 공 공 용	20	42 × 69.5 + 15.0 × 8.0	0.030
일 반 용 공 공 용	50	56 × 91.5 + 19.0 × 12.0	0.040
일 반 용 공 공 용	100	71 × 113.5 + 23.0 × 15.0	0.050
재 사 용	10	36 × 53.5 + 12.0 × 7.0	0.025
재 사 용	20	45 × 65.3 + 15.0 × 8.0	0.030
재 사 용	30	58 × 70.5 + 18.0 × 9.0	0.035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별표 8] <개정 2002.12.31,2006.1.31>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24조제2항 관련)

<산정방법>

$$L\text{당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 \text{봉투제작비} + \text{판매이익}$$

- (주) 1) 쓰레기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 가격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4) 판매수수료 요율은 10%를 기준으로 적용 $\langle L\text{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L) \times \text{주민부담율목표치} + \text{봉투 제작비} \rangle \times 0.1$ 산정하여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5) 판매가격은 원단위에서 절상함
- 6) 공급가격은 산출가격에 판매가격의 원 단위 절상으로 인한 차액을 포함 결정

<판매가격>

(단위:원)

용량(l)	공급가격	판매이익	판매가격	비 고
5	135	15	150	
10	225	25	250	
20	405	45	450	
30	630	70	700	
50	990	110	1,100	
100	1,980	220	2,200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0- 1580호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년 10 월 15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7을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로 개정
- 나. 제2조 중 제13조의 4를 제16조로 개정

3. 의견제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감사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전화 : 063-450-6111, FAX : 063-450-4333,
전자우편 : wlansrla@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감사담당관 감사계 (전화 063-450-6111
김지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4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17”을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26조”로 한다.

제2조 중 “제13조의4”를 “제1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 ----- ----- ----- ----- -----.</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군산시 19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제16조----- ----- ----- ----- ----- -----.</p>

전기공급설비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0 - 117호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450-4447) 및 경암동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처(440-332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15.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경암동 59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나. 명 칭 : 군산복합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 146,000㎡
 - 나. 규 모 : 발전설비 718.4MW 1기(가스터빈-배열회수보일러-증기터빈식)
 - 다.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당초('10.4.2)	변 경		
토 지 이 용 계 획	발전시설	73,227	41,129	가스 및 스팀 터빈, 제어실, 사무실, 경비실, 실내테니스장, 다목적 운동공간 등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237대) 공원 등 조경부지
	관리시설	1,740	19,007	
	교통시설	23,925	24,645	
	녹지시설	47,108	61,219	
	소 계	146,000	146,000	
건 축 계 획	건축연면적	39,047	39,047	-
	공작물	17개소	17개소	

4. 사업시행자 :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당초 : 2007. 8. 24 ~ 2010. 05. 31
 - ▷ 변경 : 2007. 8. 24 ~ 2010. 10.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계제실음생략
7. 관계도서 : 계제실음생략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0 -119호

-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2.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10. 15.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서면 옥봉리·선연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 2) 명 칭 : 군산 C.C 조성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면 적 : 4,240,089㎡
 - 2) 규 모 : 81홀(회원제 18홀, 대중제 63홀)
 - 토지이용계획 : 붙임참조
 - 시설배치계획 : 붙임참조
- 4.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741번지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레저산업(주) 대표 강신석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5, 6단계 시행계획 변경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당초	대중제 27홀 (’04.06.~’06.02.) A=1,571,961㎡	대중제 9홀 (’04.06.~’06.08.) A=410,875㎡	회원제 18홀 (’04.06.~’07.01.) A=670,293㎡	대중제 18홀 (’06.05.~’08.01.) A=606,563㎡	대중제 9홀 (’06.05.~’09.12.) A=297,386㎡	부대시설 (’09.10.~’11.12.) A=683,011㎡
변경	대중제 27홀 (’04.06.~’06.02.) A=1,571,961㎡	대중제 9홀 (’04.06.~’06.08.) A=410,875㎡	회원제 18홀 (’04.06.~’07.01.) A=670,293㎡	대중제 18홀 (’06.05.~’08.01.) A=606,563㎡	대중제 9홀 (’06.05.~’09.12.) A=292,057㎡	부대시설 (’09.10.~’11.12.) A=688,340㎡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붙임서류 참조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8. 관계도서 : 붙임서류 실음생략

▣. 토지이용계획

(단위 : m²)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성비 (%)	단 계 별 사 업 추 진 계 획								비 고	
					1 단계 대중27홀	2 단계 대중9홀	3 단계 회원제18홀	4 단계 대중18홀	5 단계 대중9홀		6단계 부대시설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사 업 기 간	2004.6.22 ~ 2011.12.31	2004.6.22 ~ 2011.12.31			2004.6.22 ~ 2006.2.28	2004.6.22 ~ 2006.8.31	2004.6.22 ~ 2007.1.31	2006.5.31 ~ 2008.1.	2006.5.31 ~ 2009.12.31	2006.5.31 ~ 2009.12.31	2009.10.31 ~ 2011.12.31	2009.10.31 ~ 2011.12.31		
총 계	4,240,089	4,240,089	-	100%	1,571,961	410,875	670,293	606,563	297,386	292,057	683,011	688,340		
차 별 사 설	소 계	1,062,520	1,062,520	-	25.06%	363,546	123,218	200,924	230,553	113,470	113,470	30,809	30,809	
	티	74,521	74,521	-		30,931	7,550	12,002	16,007	8,031	8,031	-	-	
	그린	58,952	58,952	-		23,335	6,428	11,327	11,926	5,936	5,936	-	-	
	벙커	66,134	66,134	-		6,571	3,919	26,642	19,160	9,842	9,842	-	-	
	페어웨이	483,330	483,330	-		165,247	59,170	85,549	114,007	59,357	59,357	-	-	
	러프	346,509	346,509	-		136,357	46,151	64,244	69,453	30,304	30,304	-	-	
	골프연습장	30,000	30,000	-		-	-	-	-	-	-	30,000	30,000	
	연습그린	3,074	3,074	-		1,105	-	1,160	-	-	-	809	809	
간 별 사 설	소 계	103,799	103,799	-	2.45%	38,644	6,330	11,175	890	350	350	46,410	46,410	19개 동
	클럽하우스	45,654	45,654	-		37,894	-	7,760	-	-	-	-	-	2개 동
	숙박시설	27,524	27,524	-		-	-	-	-	-	-	27,524	27,524	1개 동
	휴게소	2,947	2,947	-		750	250	707	890	350	350	-	-	9개 동
	관리동	5,721	5,721	-		-	3,013	2,708	-	-	-	-	-	3개 동
	수위실	130	130	-		-	-	-	-	-	-	130	130	1개 동
	가스저장창고	150	150	-		-	-	-	-	-	-	150	150	1개 동
	창고	2,100	2,100	-		-	2,100	-	-	-	-	-	-	1개 동
	지원용지	18,606	18,606	-		-	-	-	-	-	-	18,606	18,606	
	가압펌프실	967	967	-		-	967	-	-	-	-	-	-	1개 동
면 적 사 설	소 계	239,625	239,625	-	5.65%	76,355	13,386	37,312	38,900	17,013	12,013	56,659	61,659	
	골프장주차장	69,000	69,000	-		17,000	-	9,706	13,628	5,000	-	23,666	28,666	
	연습장주차장	-	-	-		-	-	-	-	-	-	-	-	
	오수처리장	1,000	1,000	-		700	-	-	-	-	-	300	300	
	가스저장탱크	(150)	(150)	-		(150)	-	-	-	-	-	-	-	지하매설
	정수시설상수탱크	(210)	(210)	-		(210)	-	-	-	-	-	-	-	지하매설
	유류저장탱크	(98.2)	(98.2)	-		-	(55)	(43.2)	-	-	-	-	-	지하매설
	가압장	100	100	-		100	-	-	-	-	-	-	-	
	진입도로(부지내)	12,500	12,500	-		12,500	-	-	-	-	-	-	-	
	관리도로	35,121	35,121	-		2,428	-	-	-	-	-	32,693	32,693	
노 선 사 설	소 계	2,834,145	2,834,145	-	66.84%	1,093,416	267,941	420,882	336,220	166,553	166,224	549,133	549,462	
	묘포장	4,418	4,418	-		-	-	-	4,418	-	-	-	-	
	복원녹지	1,008,640	1,008,969	329		362,902	119,100	143,982	157,153	63,981	63,981	161,522	161,851	
	원형보존녹지(구거)	1,595,239	1,595,239	-		681,478	145,584	173,550	129,238	77,778	77,778	387,611	387,611	
	원형보존녹지(임야)	225,848	225,519	-329		49,036	3,257	103,350	45,411	24,794	24,465	-	-	
	도로	96,710	96,710	-		38,477	7,085	22,009	17,126	12,013	12,013	-	-	
	응급도로	25,194	25,194	-		5,150	6,301	5,597	8,146	-	-	-	-	
	노선	2,834,145	2,834,145	-		1,093,416	267,941	420,882	336,220	166,553	166,224	549,133	549,462	

■ 시설계획

(단위 : m²)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비고	
				1단계 (대중27홀)	2단계 (대중9홀)	3단계 (회원제18홀)	4단계 (대중18홀)	5단계 (대중9홀)		6단계 부대시설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체 육 시설	1 체육시설	30,181m 325par	30,181m 325par	-	10,240m 109par	3,469m 36par	6,687m 72par	6,633m 72par	3,152m 36par	3,152m 36par	-	-	
	티	363개소	363개소	-	137개소	43개소	77개소	72개소	34개소	34개소	-	-	
	그린	82개소	82개소	-	27개소	9개소	18개소	19개소	9개소	9개소	-	-	
	벙커	192개소	192개소	-	51개소	22개소	63개소	36개소	20개소	20개소	-	-	
	페어웨이	90개소	90개소	-	28개소	9개소	21개소	20개소	12개소	12개소	-	-	
	러프	117개소	117개소	-	29개소	11개소	30개소	30개소	17개소	17개소	-	-	
	골프연습장	30타석	30타석	-	-	-	-	-	-	-	30타석	30타석	
연습그린	5개소	5개소	-	3개소	-	1개소	-	-	-	1개소	1개소		
건 축 시설	2 건축시설	30,849.09	30,849.09	-	10,560.13	2,223.10	6,565.76	288.60	102.33	102.33	11,112.17	11,112.17	19개동
	클럽하우스	15,493.63	15,493.63	-	10,283.45	-	5,210.18	-	-	-	-	-	2개동
	숙박시설	10,306.89	10,306.89	-	-	-	-	-	-	-	10,306.89	10,306.89	1개동
	휴게소	1,014.95	1,014.95	-	276.68	96.00	251.34	288.60	102.33	102.33	-	-	9개동
	관리동	2,913.53	2,913.53	-	-	1,070.78	1,104.24	-	-	-	741.51	741.51	3개동
	수위실	16.13	16.13	-	-	-	-	-	-	-	16.13	16.13	1개동
	가스저장창고	47.64	47.64	-	-	-	-	-	-	-	47.64	47.64	1개동
	창고	816.08	816.08	-	-	816.08	-	-	-	-	-	-	1개동
	가압펌프실	240.24	240.24	-	-	240.24	-	-	-	-	-	-	1개동
공 공 시설	골프장주차장	1048대	1048대	-	304대	-	194대	299대	196대	19대	55대	232대	
	연습장주차장	-	-	-	-	-	-	-	-	-	-	-	
	오수처리장	620m ² /1일	620m ² /1일	-	500m ² /1일	-	-	-	-	-	120m ² /1일	120m ² /1일	
	가스저장탱크	20TON	20TON	-	20TON	-	-	-	-	-	-	-	지하매설
	정수시설 상수탱크	500m ³ /1일 100TON	500m ³ /1일 100TON	-	500m ³ /1일 100TON	-	-	-	-	-	-	-	지하매설
	유류저장탱크	12,000L	12,000L	-	-	7,000L	5,000L	-	-	-	-	-	지하매설
	가압장	252m ² /1일	252m ² /1일	-	252m ² /1일	-	-	-	-	-	-	-	
	진입도로 (부지내)	B=18.5m 675m	B=18.5m 675m	-	B=18.5m 675m	-	-	-	-	-	-	-	
	관 리 도 로	B=4m 607m	B=4m 607m	-	B=4m 607m	-	-	-	-	-	-	-	
		B=6m 5,449m	B=6m 5,449m	-	-	-	-	-	-	-	B=6m 5,449m	B=6m 5,449m	
도 로	B=2.4m	B=2.4m	-	-	-	-	-	-	-	-	-		
	B=2.9m 33,348m	B=2.9m 33,348m	-	B=2.9m 13,268m	B=2.9m 2,443m	B=2.9m 7,589m	B=2.9m 5,906m	B=2.9m 4,142m	B=2.9m 4,142m	-	-		
응 급 도 로	B=3m 8,398m	B=3m 8,398m	-	B=3m 1,717m	B=3m 2,100m	B=3m 1,866m	B=3m 2,715m	-	-	-	-		
녹 지 시설	4 녹지시설	2,834,145	2,834,145	-	1,093,416	267,941	420,882	336,220	166,553	166,224	549,133	549,462	
	묘포장	4,418	4,418	-	-	-	-	4,418	-	-	-	-	
	복원녹지	1,008,640	1,008,969	329	362,902	119,100	143,982	148,058	63,981	63,981	161,522	161,851	
	원형보존녹지 (구)	1,595,239	1,595,239	-	681,478	145,584	173,550	138,106	77,778	77,778	387,611	387,611	
	원형보존녹지 (임)	225,848	225,519	-329	49,036	3,257	103,350	45,638	24,794	24,465	-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	군산	옥구	어은	1537	- 7	염	943	94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	군산	옥구	어은	1537	- 41	답	188	188	전라북도					
3	군산	옥구	어은	1537	- 42	구	325	325	전라북도					
4	군산	옥구	어은	1537	- 44	구	11,191	11,19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	군산	옥구	어은	1541	- 2	염	4,750	4,75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6	군산	옥구	어은	1541	- 3	체	5,290	5,29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7	군산	옥구	어은	1541	- 4	염	490	49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	군산	옥구	어은	1541	- 6	체	2,275	2,27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9	군산	옥구	어은	1541	- 7	체	9,706	9,70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0	군산	옥구	어은	1541	- 8	체	7,760	7,76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1	군산	옥구	어은	1541	- 9	체	1,160	1,16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2	군산	옥구	어은	1541	- 10	체	171,06 8	171,06 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3	군산	옥구	어은	1541	- 11	체	1,666	1,66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4	군산	옥구	어은	1541	- 12	체	12,838	12,83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5	군산	옥구	어은	1541	- 13	염	3,487	3,48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6	군산	옥구	어은	1541	- 14	체	19,588	19,58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7	군산	옥구	어은	1541	- 15	염	3,121	3,12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8	군산	옥구	어은	1541	- 16	체	8,094	8,09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9	군산	옥구	어은	1541	- 18	염	51,609	51,60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0	군산	옥구	어은	1541	- 19	체	16,032	16,03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1	군산	옥구	어은	1541	- 20	염	30,137	30,13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2	군산	옥구	어은	1541	- 21	체	7,268	7,26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3	군산	옥구	어은	1541	- 23	체	350	35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4	군산	옥구	어은	1541	- 24	체	1,404	1,40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5	군산	옥구	어은	1541	- 25	염	3,182	3,18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6	군산	옥구	어은	1541	- 26	체	6,773	6,77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7	군산	옥구	어은	1541	- 28	염	10,051	10,05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8	군산	옥구	어은	1541	- 29	체	9,511	9,51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9	군산	옥구	어은	1541	- 30	체	4,211	4,21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0	군산	옥구	어은	1541	- 31	염	5,892	5,89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1	군산	옥구	어은	1541	- 32	체	5,765	5,76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2	군산	옥구	어은	1541	- 33	체	14,675	14,67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3	군산	옥구	어은	1541	- 34	체	10,454	10,45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4	군산	옥구	어은	1541	- 35	염	42,637	42,63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5	군산	옥구	어은	1541	- 36	염	47,088	47,08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6	군산	옥구	어은	1541	- 37	염	2,789	2,78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7	군산	옥구	어은	1541	- 38	염	3,808	3,80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8	군산	옥구	어은	1541	- 39	염	78	7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39	군산	옥구	어은	1541			144,340	144,34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0	군산	옥구	어은	1554	4	잡	382	38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1	군산	옥구	어은	1554	6	도	108	10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	군산	옥구	어은	1554	11	체	584	58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3	군산	옥구	어은	1554	13	체	175	17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4	군산	옥구	어은	1554	17	잡	349	34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5	군산	옥구	어은	1554	21	잡	4,547	4,54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	군산	옥구	어은	1554	22	체	1,241	1,24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	군산	옥구	어은	1554	25	잡	110	11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8	군산	옥구	어은	1554	28	잡	532	53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9	군산	옥구	어은	1554	32	잡	1,812	1,81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0	군산	옥구	어은	1554	36	잡	647	64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	군산	옥구	어은	1554	40	잡	294	29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서울시중구충정로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업(주)	리1727-1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52	군산	옥구	어은	1554	- 44	잡	226	22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3	군산	옥구	어은	1554	- 48	도	89	8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4	군산	옥구	어은	1554	- 52	도	989	98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5	군산	옥구	어은	1554	- 55	도	31	3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6	군산	옥구	어은	1554	- 58	도	141	14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7	군산	옥구	어은	1554	- 62	도	423	42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8	군산	옥구	어은	1554	- 66	도	217	21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9	군산	옥구	어은	1554	- 70	도	79	7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60	군산	옥구	어은	1554	- 74	도	56	5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61	군산	옥구	어은	1554	- 75	잡	602	60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62	군산	옥구	어은	1554	- 76	도	144	14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63	군산	옥구	어은	1555	- 6	구	67	6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64	군산	옥구	어은	1555	-	11	체	33	3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65	군산	옥구	어은	1555	-	15	구	48	4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66	군산	옥구	어은	1555	-	19	구	455	45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67	군산	옥구	어은	1555	-	21	구	256	25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68	군산	옥구	어은	1555	-	24	구	14	1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69	군산	옥구	어은	1555	-	27	구	102	10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70	군산	옥구	어은	1555	-	31	구	327	32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71	군산	옥구	어은	1555	-	35	구	76	7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72	군산	옥구	어은	1555	-	39	구	29	2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73	군산	옥구	어은	1555	-	43	구	36	3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74	군산	옥구	어은	1555	-	44	구	107	10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75	군산	옥구	어은	1556	-	2	잡	198	19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76	군산	옥구	어은	1556	-	7	체	11	1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전북은행	금암699-2(나운동)		
77	군산	옥구	어은	1556	- 11	잡	149	14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78	군산	옥구	어은	1556	- 14	잡	1,296	1,29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79	군산	옥구	어은	1556	- 15	체	131	13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0	군산	옥구	어은	1556	- 17	잡	747	74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1	군산	옥구	어은	1556	- 20	잡	40	4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2	군산	옥구	어은	1556	- 23	잡	336	33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3	군산	옥구	어은	1556	- 25	잡	1,162	1,16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4	군산	옥구	어은	1556	- 29	잡	189	18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5	군산	옥구	어은	1556	- 33	잡	19	1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6	군산	옥구	어은	1556	- 36	잡	111	11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7	군산	옥구	어은	1556	- 37	잡	358	35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8	군산	옥구	어은	1557	- 5	염	8,628	8,62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89	군산	옥구	어은	1557	- 6	체	1,626	1,626	군산레저산업	군산시옥서면옥봉	농업협동	서울시중구충정로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업(주)	리1727-1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90	군산	옥구	어은	1557	- 7	염	45,422	45,42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91	군산	옥구	어은	1557	- 8	체	389	38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92	군산	옥구	어은	1557	- 11	체	1,665	1,66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93	군산	옥구	어은	1557	- 12	염	8,162	8,16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94	군산	옥구	어은	1557	- 13	체	2,614	2,61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95	군산	옥구	어은	1557	- 14	체	20,323	20,32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96	군산	옥구	어은	1557	- 15	염	2,259	2,25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97	군산	옥구	어은	1557	- 18	염	370	37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98	군산	옥구	어은	1557	- 20	염	22,613	22,61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99	군산	옥구	어은	1557	- 22	체	1,095	1,09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00	군산	옥구	어은	1557	- 23	염	7,735	7,73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01	군산	옥구	어은	1557	- 26	체	357	35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02	군산	옥구	어은	1557	-	27	체	9,156	9,15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03	군산	옥구	어은	1557	-	28	체	10,560	10,56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04	군산	옥구	어은	1557	-	30	체	868	86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5	군산	옥구	어은	1557			연	4,896	4,89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06	군산	옥구	어은	1564	-	3	답	7,436	7,43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07	군산	옥구	어은	1564	-	53	답	8,997	8,99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08	군산	옥구	어은	1564	-	55	체	3,014	3,01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09	군산	옥구	어은	1564	-	61	답	104	10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10	군산	옥구	어은	1564	-	64	답	4,927	4,92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11	군산	옥구	어은	1564	-	65	체	127	12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12	군산	옥구	어은	1564	-	67	체	651	65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13	군산	옥구	어은	1564	-	68	체	5,121	5,12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14	군산	옥구	어은	1564	-	70	답	6,782	6,78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15	군산	옥구	어은	1564	-	72	체	1,418	1,41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16	군산	옥구	어은	1564	-	76	답	1,749	1,74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17	군산	옥구	어은	1564	-	78	답	792	79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18	군산	옥구	어은	1564	-	80	체	2,708	2,70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19	군산	옥구	어은	1564	-	82	답	27	2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20	군산	옥구	어은	1564	-	83	답	5,421	5,42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21	군산	옥구	어은	1564	-	90	도	89	8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22	군산	옥구	어은	1564	-	96	도	125	12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23	군산	옥구	어은	1564	-	99	구	6	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24	군산	옥구	어은	1564	-	104	구	55	5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25	군산	옥구	어은	1564	-	107	구	590	59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26	군산	옥구	어은	1564	-	109	구	349	34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27	군산	옥구	어은	1564	-	117	구	56	5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업(주)	리1727-1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28	군산	옥구	어은	1564	-	119	구	37	3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29	군산	옥구	어은	1564	-	127	구	565	56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30	군산	옥구	어은	1564	-	129	구	382	38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31	군산	옥구	어은	1564	-	130	구	168	16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32	군산	옥구	어은	1564	-	136	구	309	30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33	군산	옥구	어은	1564	-	138	답	18,363	18,36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34	군산	옥구	어은	1564	-	139	답	771	77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35	군산	옥구	어은	1564	-	140	구	194	19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36	군산	옥구	어은	1564	-	141	구	350	35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37	군산	옥구	어은	1564	-	142	구	18	1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38	군산	옥구	어은	1570	-	3	잡	555	55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39	군산	옥구	어은	1570	-	4	도	71	7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40	군산	옥구	어은	1570	-	12	잡	574	57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41	군산	옥구	어은	1570	-	14	체	779	77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42	군산	옥구	어은	1570	-	16	잡	1,005	1,00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43	군산	옥구	어은	1570	-	20	잡	158	15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44	군산	옥구	어은	1570	-	22	도	134	13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45	군산	옥구	어은	1570	-	25	도	190	19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46	군산	옥구	어은	1570	-	29	도	37	3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47	군산	옥구	어은	1570	-	30	잡	760	76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48	군산	옥구	어은	1570	-	31	도	342	34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49	군산	옥구	어은	1571	-	9	구	137	13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50	군산	옥구	어은	1571	-	10	체	2,541	2,54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51	군산	옥구	어은	1571	-	13	체	2,248	2,24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52	군산	옥구	어은	1571	-	16	잡	247	24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근저당	

											전북은행	금암699-2(나운동)		
153	군산	옥구	어은	1571	-	20	구	65	6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54	군산	옥구	어은	1571	-	24	구	181	18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55	군산	옥구	어은	1571	-	28	구	27	2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56	군산	옥구	어은	1571	-	29	구	124	12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57	군산	옥구	어은	1573	-	10	답	5,235	5,23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58	군산	옥구	어은	1573	-	20	답	3,405	3,40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59	군산	옥구	어은	1573	-	29	체	13,311	13,31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60	군산	옥구	어은	1573	-	47	체	7,916	7,91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61	군산	옥구	어은	1573	-	48	답	1,427	1,42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62	군산	옥구	어은	1573	-	49	답	2,734	2,73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63	군산	옥구	어은	1573	-	52	도	360	36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64	군산	옥구	어은	1573	-	55	답	3,678	3,67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65	군산	옥구	어은	1573	-	62	답	13	13	군산레저산업	군산시옥서면옥봉	농업협동	서울시중구충정로	근저당

									업(주)	리1727-1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66	군산	옥구	어은	1573	-	66	답	600	60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67	군산	옥구	어은	1573	-	67	답	479	47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68	군산	옥구	어은	1573	-	70	답	1,129	1,12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69	군산	옥구	어은	1573	-	71	답	417	41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70	군산	옥구	어은	1573	-	75	답	752	75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71	군산	옥구	어은	1573	-	76	답	413	41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72	군산	옥구	어은	1573	-	77	답	720	72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73	군산	옥구	어은	1573	-	80	답	586	58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74	군산	옥구	어은	1573	-	81	답	396	39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75	군산	옥구	어은	1573	-	84	구	361	36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76	군산	옥구	어은	1573	-	89	구	60	6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77	군산	옥구	어은	1573	-	90	구	246	24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78	군산	옥구	어은	1573	-	92	구	94	9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79	군산	옥구	어은	1573	-	93	구	23	2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80	군산	옥구	어은	1573	-	94	구	727	72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81	군산	옥구	어은	1573	-	97	구	62	6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82	군산	옥구	어은	1573	-	98	구	29	2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183	군산	옥구	어은	1573	-	101	도	43	4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84	군산	옥구	어은	1573	-	102	도	21	2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85	군산	옥구	어은	1573	-	103	구	191	19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86	군산	옥구	어은	1573	-	104	구	110	11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87	군산	옥구	어은	1573	-	107	구	31	3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88	군산	옥구	어은	1573	-	108	구	19	1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89	군산	옥구	어은	1573	-	109	답	2,368	2,36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190	군산	옥구	어은	1573	-	110	답	2,152	2,15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전북은행	금암699-2(나운동)			
191	군산	옥구	어은	1573	-	111	답	2,092	2,09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92	군산	옥구	어은	1573	-	112	답	2,244	2,24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93	군산	옥구	어은	1573	-	113	구	286	28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94	군산	옥구	어은	1573	-	114	구	118	11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95	군산	옥구	어은	1573	-	115	구	151	15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96	군산	옥구	어은	1573	-	116	도	111	11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97	군산	옥구	어은	1573	-	117	구	96	9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98	군산	옥구	어은	1575	-	2	염	16,625	16,62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199	군산	옥구	어은	1575	-	3	염	689	68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00	군산	옥구	어은	1575	-	9	염	39	3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01	군산	옥구	어은	1575	-	10	염	2,994	2,99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02	군산	옥구	어은	1576	-	8	답	2,514	2,51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03	군산	옥구	어은	1576	-	10	답	420	420	군산레저산업	군산시옥서면옥봉	농업협동	서울시중구충정로	근저당	

									업(주)	리1727-1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04	군산	옥구	어은	1576	-	18	답	3,355	3,35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05	군산	옥구	어은	1576	-	20	답	238	23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06	군산	옥구	어은	1576	-	28	답	3,929	3,92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07	군산	옥구	어은	1576	-	30	답	430	43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08	군산	옥구	어은	1576	-	38	답	373	37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209	군산	옥구	어은	1576	-	41	구	1,369	1,36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10	군산	옥구	어은	1576	-	42	도	242	24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11	군산	옥구	어은	1576	-	43	구	382	38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12	군산	옥구	어은	1576	-	72	답	184	18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13	군산	옥구	어은	1576	-	73	답	3,950	3,95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14	군산	옥구	어은	1576	-	74	구	211	21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15	군산	옥구	어은	1576	-	75	구	184	18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16	군산	옥구	어은	1576			답	431	43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17	군산	옥구	어은	1578	4	염		305	30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18	군산	옥구	어은	1578	8	염		897	89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19	군산	옥구	어은	1578	9	염		2,210	2,21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20	군산	옥구	어은	1578	10	염		382	38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21	군산	옥구	어은	1578		염		7,505	7,50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22	군산	옥구	어은	1579	5	잡		115	11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23	군산	옥구	어은	1579	8	잡		464	46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24	군산	옥구	어은	1579	12	잡		80	8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25	군산	옥구	어은	1579	13	잡		2,269	2,26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26	군산	옥구	어은	1579	17	잡		440	44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27	군산	옥구	어은	1579	18	잡		1,489	1,48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28	군산	옥구	어은	1579	19	잡		399	39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전북은행	금암699-2(나운동)			
229	군산	옥구	어은	1579	-	20	잡	264	26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30	군산	옥구	어은	1579			잡	412	41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31	군산	옥구	어은	1580	-	57	체	1,527	1,52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32	군산	옥구	어은	1580	-	58	체	252,826	252,82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33	군산	옥구	어은	1580	-	59	체	20,287	20,28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34	군산	옥구	어은	1580	-	60	체	146,465	146,46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35	군산	옥구	어은	1580	-	61	체	8,658	8,65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36	군산	옥구	어은	1580	-	62	체	11,438	11,43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37	군산	옥구	어은	1580	-	63	체	4,079	4,07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38	군산	옥구	어은	1580	-	64	체	3,729	3,72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39	군산	옥구	어은	1580	-	65	체	95	9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40	군산	옥구	어은	1580	-	66	체	250	25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41	군산	옥구	어은	1580	-	67	체	9,660	9,66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42	군산	옥구	어은	1580			체	71,345	71,34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43	군산	옥구	어은	1582			체	6,260	6,26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44	군산	옥서	옥봉	1712	-	18	도	259	25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45	군산	옥서	옥봉	1712	-	20	구	8,937	8,93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46	군산	옥서	옥봉	1712	-	27	답	134	134		전라북도				
247	군산	옥서	옥봉	1712	-	28	도	10	10		전라북도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248	군산	옥서	옥봉	1712	-	33	답	617	61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49	군산	옥서	옥봉	1712	-	34	답	212	21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50	군산	옥서	옥봉	1712	-	37	구	544	544		전라북도				
251	군산	옥서	옥봉	1712	-	40	답	94	94		전라북도				
252	군산	옥서	옥봉	1712	-	41	체	1,455	1,45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53	군산	옥서	옥봉	1712	-	42	구	330	33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근저당	

254	군산	옥서	옥봉	1712	-	44	답	825	82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55	군산	옥서	옥봉	1712	-	45	구	179	17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56	군산	옥서	옥봉	1714	-	1	잡	2,049	2,04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57	군산	옥서	옥봉	1714	-	3	잡	1,913	1,91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58	군산	옥서	옥봉	1714	-	5	도	308	30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59	군산	옥서	옥봉	1714	-	7	체	808	80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60	군산	옥서	옥봉	1714	-	9	체	128	12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61	군산	옥서	옥봉	1714	-	10	체	2,425	2,42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62	군산	옥서	옥봉	1714	-	11	잡	2,085	2,08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63	군산	옥서	옥봉	1714	-	13	체	4,790	4,79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64	군산	옥서	옥봉	1714	-	16	체	1,272	1,27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65	군산	옥서	옥봉	1714	-	18	체	298	29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66	군산	옥서	옥봉	1714	-	19	체	536	53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업(주)	리1727-1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67	군산	옥서	옥봉	1714	-	20	잡	1,822	1,82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68	군산	옥서	옥봉	1714	-	21	체	1,043	1,04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69	군산	옥서	옥봉	1714	-	22	잡	227	22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70	군산	옥서	옥봉	1714	-	23	잡	764	76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71	군산	옥서	옥봉	1714	-	24	잡	567	56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72	군산	옥서	옥봉	1714	-	25	잡	1,764	1,76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73	군산	옥서	옥봉	1714	-	26	잡	1,442	1,44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274	군산	옥서	옥봉	1714	-	27	잡	554	55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75	군산	옥서	옥봉	1714	-	28	잡	914	91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76	군산	옥서	옥봉	1714	-	29	체	4,032	4,03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77	군산	옥서	옥봉	1714	-	30	잡	737	73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78	군산	옥서	옥봉	1714	-	31	체	2,340	2,34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279	군산	옥서	옥봉	1714	-	32	잡	1,120	1,12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80	군산	옥서	옥봉	1714	-	33	잡	99	9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81	군산	옥서	옥봉	1714	-	34	체	526	52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82	군산	옥서	옥봉	1714	-	35	도	134	13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83	군산	옥서	옥봉	1714	-	36	체	22	2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84	군산	옥서	옥봉	1714	-	37	도	271	27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85	군산	옥서	옥봉	1714	-	38	도	132	13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86	군산	옥서	옥봉	1714	-	39	도	233	23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287	군산	옥서	옥봉	1714	-	40	도	416	41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88	군산	옥서	옥봉	1714	-	41	도	41	4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89	군산	옥서	옥봉	1714	-	42	체	152	15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90	군산	옥서	옥봉	1714	-	43	체	34	3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91	군산	옥서	옥봉	1714	-	44	체	293	293	군산레저산업	군산시옥서면옥봉	농업협동	서울시중구충정로	근저당	

									업(주)	리1727-1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292	군산	옥서	옥봉	1714	-	45	체	521	52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93	군산	옥서	옥봉	1714	-	46	체	150	15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94	군산	옥서	옥봉	1714	-	47	잡	411	41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95	군산	옥서	옥봉	1714	-	48	잡	203	20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96	군산	옥서	옥봉	1714	-	49	도	43	4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97	군산	옥서	옥봉	1714	-	50	체	124	12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98	군산	옥서	옥봉	1715	-	3	체	806	80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299	군산	옥서	옥봉	1715	-	4	체	2,052	2,05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300	군산	옥서	옥봉	1715	-	5	염	1,859	1,85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01	군산	옥서	옥봉	1715	-	6	염	11,874	11,87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02	군산	옥서	옥봉	1715	-	7	염	15,640	15,64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03	군산	옥서	옥봉	1715	-	8	체	4,418	4,41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04	군산	옥서	옥봉	1715	-	9	체	432	43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05	군산	옥서	옥봉	1715	-	10	체	1,756	1,75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06	군산	옥서	옥봉	1715	-	11	염	8,719	8,71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07	군산	옥서	옥봉	1715	-	12	염	19,650	19,65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08	군산	옥서	옥봉	1715	-	13	염	9,903	9,90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09	군산	옥서	옥봉	1715	-	14	염	252	25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10	군산	옥서	옥봉	1715	-	15	염	4,091	4,09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11	군산	옥서	옥봉	1715	-	16	염	268	26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12	군산	옥서	옥봉	1715	-	17	염	16,325	16,32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313	군산	옥서	옥봉	1715	-	18	염	350	35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14	군산	옥서	옥봉	1715	-	19	염	12,278	12,27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15	군산	옥서	옥봉	1715	-	20	염	4,645	4,64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16	군산	옥서	옥봉	1715	-	21	염	5,609	5,60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17	군산	옥서	옥봉	1715	-	22	염	436	43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18	군산	옥서	옥봉	1715	-	23	염	2,334	2,33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19	군산	옥서	옥봉	1715	-	24	체	119,305	119,30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20	군산	옥서	옥봉	1715	-	25	염	8,868	8,86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21	군산	옥서	옥봉	1715	-	26	염	222	22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22	군산	옥서	옥봉	1715	-	27	염	2,030	2,03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23	군산	옥서	옥봉	1715	-	28	염	136	13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24	군산	옥서	옥봉	1715	-	29	염	220	22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25	군산	옥서	옥봉	1715	-	30	염	10,825	10,82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326	군산	옥서	옥봉	1715	-	31	염	1,883	1,88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27	군산	옥서	옥봉	1715	-	32	염	1,190	1,19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28	군산	옥서	옥봉	1715	-	33	염	329	32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29	군산	옥서	옥봉	1715	-	34	염	148,274	148,27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30	군산	옥서	옥봉	1715	-	35	체	440	44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31	군산	옥서	옥봉	1715	-		염	96,652	96,65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32	군산	옥서	옥봉	1725	-	2	도	31	3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33	군산	옥서	옥봉	1727	-	4	잡	26	2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34	군산	옥서	옥봉	1727	-	8	체	327	32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35	군산	옥서	옥봉	1727	-	9	잡	907	90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36	군산	옥서	옥봉	1727	-	11	체	1,800	1,80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37	군산	옥서	옥봉	1727	-	12	잡	1,015	1,01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38	군산	옥서	옥봉	1727	-	13	체	1,682	1,68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339	군산	옥서	옥봉	1727	-	14	잡	702	70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40	군산	옥서	옥봉	1727	-	15	체	790	79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41	군산	옥서	옥봉	1727	-	16	잡	1,036	1,03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근저당	

											전북은행	금암699-2(나운동)			
342	군산	옥서	옥봉	1727	-	17	체	4,176	4,17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43	군산	옥서	옥봉	1727	-	18	잡	742	74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44	군산	옥서	옥봉	1727	-	19	체	22	2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45	군산	옥서	옥봉	1727	-	20	잡	77	7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46	군산	옥서	옥봉	1727	-	21	잡	304	30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47	군산	옥서	옥봉	1727	-	22	잡	285	28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48	군산	옥서	옥봉	1727	-	23	체	3	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49	군산	옥서	옥봉	1729	-	3	염	2,204	2,20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50	군산	옥서	옥봉	1729	-	6	염	22,409	22,40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51	군산	옥서	옥봉	1729	-	8	염	1,572	1,57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52	군산	옥서	옥봉	1729	-	9	염	7,400	7,40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53	군산	옥서	옥봉	1730	-	4	체	511	51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54	군산	옥서	옥봉	1730	-	7	구	352	352	군산레저산업	군산시옥서면옥봉	농업협동	서울시중구충정로	근저당	

									업(주)	리1727-1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55	군산	옥서	옥봉	1730	-	10	체	218	21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56	군산	옥서	옥봉	1730	-	11	구	149	14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57	군산	옥서	옥봉	1730	-	12	체	423	42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58	군산	옥서	옥봉	1730	-	13	구	200	20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59	군산	옥서	옥봉	1730	-	14	구	13	1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60	군산	옥서	옥봉	1730	-	15	체	178	17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61	군산	옥서	옥봉	1730	-	16	구	55	5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62	군산	옥서	옥봉	1730	-	17	구	157	15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63	군산	옥서	옥봉	1730	-	18	구	90	9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64	군산	옥서	옥봉	1730	-	19	구	271	27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365	군산	옥서	옥봉	1730	-	20	구	255	25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66	군산	옥서	옥봉	1730	-	21	구	133	13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근저당

367	군산	옥서	옥봉	1730	-	22	구	103	10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68	군산	옥서	옥봉	1730	-	23	체	179	17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69	군산	옥서	옥봉	1730	-	24	구	64	6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70	군산	옥서	옥봉	1730	-	25	구	23	2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71	군산	옥서	옥봉	1731	-	1	잡	5,671	5,67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72	군산	옥서	옥봉	1731	-	2	도	55	5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73	군산	옥서	옥봉	1731	-	4	체	40	4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74	군산	옥서	옥봉	1731	-	14	체	645	64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75	군산	옥서	옥봉	1731	-	17	체	308	30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76	군산	옥서	옥봉	1731	-	18	도	217	21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77	군산	옥서	옥봉	1731	-	19	잡	2,336	2,33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78	군산	옥서	옥봉	1731	-	20	체	631	63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79	군산	옥서	옥봉	1731	-	21	잡	226	226	군산레저산업	군산시옥서면옥봉	농업협동	서울시중구충정로	근저당	

										업(주)	리1727-1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80	군산	옥서	옥봉	1731	-	22	잡	654	65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81	군산	옥서	옥봉	1731	-	23	잡	341	34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82	군산	옥서	옥봉	1731	-	24	잡	941	94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83	군산	옥서	옥봉	1731	-	25	잡	821	82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84	군산	옥서	옥봉	1731	-	26	잡	549	54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85	군산	옥서	옥봉	1731	-	27	잡	264	26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86	군산	옥서	옥봉	1731	-	28	체	2,235	2,23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87	군산	옥서	옥봉	1731	-	29	잡	469	46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88	군산	옥서	옥봉	1731	-	30	체	1,295	1,29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89	군산	옥서	옥봉	1731	-	31	잡	626	62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390	군산	옥서	옥봉	1731	-	32	잡	6	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391	군산	옥서	옥봉	1731	-	33	체	362	36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392	군산	옥서	옥봉	1731	-	34	도	155	15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93	군산	옥서	옥봉	1731	-	35	체	209	20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94	군산	옥서	옥봉	1731	-	36	도	228	22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95	군산	옥서	옥봉	1731	-	37	체	927	92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96	군산	옥서	옥봉	1731	-	38	도	161	16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97	군산	옥서	옥봉	1731	-	39	체	6	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98	군산	옥서	옥봉	1731	-	40	도	66	6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399	군산	옥서	옥봉	1731	-	41	잡	166	16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00	군산	옥서	옥봉	1731	-	42	잡	101	10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01	군산	옥서	옥봉	1741	-	1	체	15,000	15,00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02	군산	옥서	옥봉	1741	-	2	체	469	46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03	군산	옥서	옥봉	1741	-	3	체	198,261	198,26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04	군산	옥서	옥봉	1741	-	4	체	3,988	3,98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405	군산	옥서	옥봉	1741	-	5	체	387,947	387,94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06	군산	옥서	옥봉	1741	-	6	체	129,157	129,15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07	군산	옥서	옥봉	1741	-	7	체	6,563	6,56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08	군산	옥서	옥봉	1741	-	8	체	293,213	293,21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09	군산	옥서	옥봉	1741	-	9	체	4,407	4,40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10	군산	옥서	옥봉	1741	-	10	체	31,489	31,48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11	군산	옥서	옥봉	1741	-	11	체	1,061	1,06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12	군산	옥서	옥봉	1741	-	12	체	1,739	1,73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13	군산	옥서	옥봉	1741	-	13	체	73,623	73,62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14	군산	옥서	옥봉	1741	-	14	체	6,752	6,75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15	군산	옥서	옥봉	1741	-	15	체	2,579	2,57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16	군산	옥서	옥봉	1741	-	16	체	1,764	1,76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417	군산	옥서	옥봉	1741	-	17	체	5,872	5,87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18	군산	옥서	옥봉	1741	-	18	체	6,764	6,76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19	군산	옥서	옥봉	1741	-	19	체	251	25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0	군산	옥서	옥봉	1741	-	20	염	37,944	37,94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1	군산	옥서	옥봉	1741	-	21	체	30,532	30,53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2	군산	옥서	옥봉	1741	-	22	체	450	45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3	군산	옥서	옥봉	1741	-	23	염	1,466	1,46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4	군산	옥서	옥봉	1741	-	24	염	2,792	2,79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5	군산	옥서	옥봉	1741	-	25	염	1,421	1,42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6	군산	옥서	옥봉	1741	-	26	염	4,441	4,44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7	군산	옥서	옥봉	1741	-	27	염	1,985	1,98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8	군산	옥서	옥봉	1741	-	28	염	1,018	1,01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29	군산	옥서	옥봉	1741	-	29	염	1,929	1,92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연번	면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내용	
430	군산	옥서	옥봉	1741 - 30	염	1,405 1,40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31	군산	옥서	옥봉	1741 - 31	염	2,055 2,05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32	군산	옥서	옥봉	1741 - 32	염	1,994 1,99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33	군산	옥서	옥봉	1741 - 33	염	1,924 1,92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34	군산	옥서	옥봉	1741 - 34	염	2,530 2,53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35	군산	옥서	옥봉	1741 - 35	염	27,799 27,79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36	군산	옥서	옥봉	1741 - 36	염	4,162 4,16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37	군산	옥서	옥봉	1741 - 37	염	7,055 7,05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38	군산	옥서	옥봉	1741 - 38	염	3,702 3,70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39	군산	옥서	옥봉	1741 - 39	염	1,347 1,34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40	군산	옥서	옥봉	1741 - 40	염	16,339 16,33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41	군산	옥서	옥봉	1741 - 41	염	2,449 2,44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42	군산	옥서	옥봉	1741 - 42	염	18,346 18,34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443	군산	옥서	옥봉	1741	- 43	염	7,569	7,56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44	군산	옥서	옥봉	1741	- 44	염	4,615	4,61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45	군산	옥서	옥봉	1741	- 45	체	1,050	1,05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46	군산	옥서	옥봉	1741	- 46	체	250	25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47	군산	옥서	옥봉	1741	- 47	체	250	25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48	군산	옥서	옥봉	1741	- 48	염	5,424	5,42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49	군산	옥서	옥봉	1741	- 49	염	5,310	5,31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50	군산	옥서	옥봉	1741	- 50	염	21,233	21,23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51	군산	옥서	옥봉	1741	- 51	염	1,247	1,24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52	군산	옥서	옥봉	1741	- 52	염	22,370	22,37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53	군산	옥서	옥봉	1741	- 53	염	950	95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54	군산	옥서	옥봉	1741	- 54	염	3,026	3,02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55	군산	옥서	옥봉	1741	- 55	염	117	11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456	군산	옥서	옥봉	1741	- 56	염	866	86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57	군산	옥서	옥봉	1741		체	67,428	67,428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58	군산	옥서	옥봉	1743	- 2	체	234	23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59	군산	옥서	옥봉	1743	- 3	체	21,771	21,77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0	군산	옥서	옥봉	1743	- 10	체	360	36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1	군산	옥서	옥봉	1743	- 11	구	174	17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2	군산	옥서	옥봉	1743	- 12	구	102	10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3	군산	옥서	옥봉	1743	- 13	체	103	10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4	군산	옥서	옥봉	1743	- 14	구	153	15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5	군산	옥서	옥봉	1743	- 15	체	634	63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6	군산	옥서	옥봉	1743	- 16	구	110	11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7	군산	옥서	옥봉	1743	- 17	구	44	4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8	군산	옥서	옥봉	1745	- 4	체	106,91 5	106,91 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69	군산	옥서	옥봉	1745	- 5	염	32,065	32,06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0	군산	옥서	옥봉	1745	- 6	염	19,381	19,38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1	군산	옥서	옥봉	1745	-	7	염	2,205	2,20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2	군산	옥서	옥봉	1745	-	8	염	8,118	8,11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3	군산	옥서	옥봉	1745	-	9	염	509	50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4	군산	옥서	옥봉	1745	-	10	염	29,159	29,15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5	군산	옥서	옥봉	1745	-	11	염	5,303	5,30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6	군산	옥서	옥봉	1745			체	57,153	57,15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7	군산	옥서	옥봉	1755	-	4	체	785	78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8	군산	옥서	옥봉	1755	-	5	체	677	67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79	군산	옥서	옥봉	1755	-	6	잡	451	45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80	군산	옥서	옥봉	1755	-	7	잡	1,918	1,91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81	군산	옥서	옥봉	1755	-	8	체	2,541	2,54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82	군산	옥서	옥봉	1755	-	9	잡	2,603	2,60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연	시	면	리	지 적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지번	지목	면적 (㎡)									
483	군산	옥서	옥봉	1755	-	10	체	834	83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84	군산	옥서	옥봉	1755	-	11	잡	365	36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85	군산	옥서	옥봉	1755	-	12	체	343	34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86	군산	옥서	옥봉	1755	-	13	잡	422	42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87	군산	옥서	옥봉	1755	-	14	체	1,630	1,63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88	군산	옥서	옥봉	1755	-	15	잡	256	25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89	군산	옥서	옥봉	1755	-	16	체	119	11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90	군산	옥서	옥봉	1755	-	17	잡	2,029	2,02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91	군산	옥서	옥봉	1755	-		잡	6,525	6,52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92	군산	옥서	옥봉	1757	-	2	구	269	26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93	군산	옥서	옥봉	1757	-	7	체	82	8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94	군산	옥서	옥봉	1757	-	8	구	21	2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95	군산	옥서	옥봉	1757	-	9	구	338	33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번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96	군산	옥서	옥봉	1757	-	10	체	541	54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97	군산	옥서	옥봉	1757	-	11	구	451	45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98	군산	옥서	옥봉	1757	-	12	구	50	5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499	군산	옥서	옥봉	1757	-	13	체	94	9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00	군산	옥서	옥봉	1757	-	14	체	2	2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01	군산	옥서	옥봉	1758	-	1	제	7,860	7,86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02	군산	옥서	옥봉	1758	-	6	체	431	431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03	군산	옥서	옥봉	1758	-	7	제	1,320	1,32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04	군산	옥서	옥봉	1758	-	8	제	145	145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05	군산	옥서	옥봉	1758	-	9	체	1,937	1,93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06	군산	옥서	옥봉	1758	-	10	제	1,320	1,32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07	군산	옥서	옥봉	1758	-	11	제	93	9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08	군산	옥서	옥봉	1758	-	12	제	184	18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시	읍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509	군산	옥서	옥봉	1758	- 13	체	49	49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0	군산	옥서	옥봉	1759	- 4	체	65,128	65,12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1	군산	옥서	옥봉	1759	- 5	유	1,206	1,20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2	군산	옥서	옥봉	1759	- 6	유	710	71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3	군산	옥서	옥봉	1759	- 7	유	2,074	2,074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4	군산	옥서	옥봉	1759	- 8	유	45,488	45,48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5	군산	옥서	옥봉	1759	- 9	체	5,496	5,496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6	군산	옥서	옥봉	1759	- 10	유	1,360	1,36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7	군산	옥서	옥봉	1759	- 11	체	967	967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8	군산	옥서	옥봉	1759	- 12	체	3,013	3,01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19	군산	옥서	옥봉	1759	- 13	체	2,100	2,100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20	군산	옥서	옥봉	1759	- 14	유	173	173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21	군산	옥서	옥봉	1759	- 15	체	1,088	1,088	군산레저산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리1727-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근저당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522	군산	옥서	옥봉	1759	유	3,207	3,20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23	군산	옥서	선연	2098	5 잡	511	51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24	군산	옥서	선연	2098	6 체	195	19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25	군산	옥서	선연	2098	8 잡	43	4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26	군산	옥서	선연	2098	9 체	17	1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27	군산	옥서	선연	2099	2 체	62	6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28	군산	옥서	선연	2099	3 잡	2,479	2,47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29	군산	옥서	선연	2099	4 체	13	1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30	군산	옥서	선연	2099	5 잡	1	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31	군산	옥서	선연	2099	7 도	471	47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32	군산	옥서	선연	2099	9 잡	620	62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33	군산	옥서	선연	2099	10 잡	53	53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34	군산	옥서	선연	2099	11 체	1,540	1,540	군산레저산	군산시옥서면옥봉	농업협동	서울시중구충정로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업(주)	리1727-1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535	군산	옥서	선연	2099	12	잡	19	1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36	군산	옥서	선연	2100	1	염	11,280	11,28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37	군산	옥서	선연	2100	6	염	1,889	1,88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38	군산	옥서	선연	2100	8	염	26,367	26,36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39	군산	옥서	선연	2100	9	염	2,289	2,28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40	군산	옥서	선연	2107	2	도	1,569	1,569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41	군산	옥서	선연	2107	3	잡	5,207	5,207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42	군산	옥서	선연	2107	6	잡	6,606	6,60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43	군산	옥서	선연	2107	7	잡	6,165	6,165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44	군산	옥서	선연	2113	2	체	351	35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45	군산	옥서	선연	2114	3	체	36	3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46	군산	옥서	선연	2114	5	체	496	49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연 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 고
	시	읍 면	리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547	군산	옥서	선연	2114	- 6	구	1,570	1,570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48	군산	옥서	선연	2114	- 8	체	654	65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49	군산	옥서	선연	2114	- 9	체	61	6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50	군산	옥서	선연	2115	- 1	유	776	77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51	군산	옥서	선연	2115		유	8,166	8,16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52	군산	옥서	선연	2116	- 2	체	754	754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53	군산	옥서	선연	2116	- 3	제	1,201	1,201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54	군산	옥서	선연	2116	- 4	체	66	66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555	군산	옥서	선연	2116	- 5	제	382	382	군산레저산 업(주)	군산시옥서면옥봉 리1727-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울시중구충정로 1가75(금남로지점) 전북전주시덕진구 금암699-2(나운동)	근저당 근저당	
합 계							4,240,08 9	4,240,0 89						

군산시 공고 제 2010 - 1568 호

공 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개간업무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 건설과 농업기반계 또는 나포면사무소에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 10. 15.

군 산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밭기반 조성 (옥수수 재배)
 2. 사업 위치 :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산145 외 3필지
 3. 지목 및 지적 : 임야 21,661㎡
 4. 사업시행면적 : 19,870㎡
 5. 사업비소요액 : 자부담 62,200천원
 6. 사업예정기간 : 2010년 11월 ~ 2011년 10월
 7. 공고기간 : 2010년 10월 15일 ~ 2010년 11월 13일
 8. 사업효과 : 농지확대 및 농업소득
 9. 사업시행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03 유진청하아파트 A-402 임현숙
- ※ 기타 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군산시 건설과 농업기반계 (☎450-4371) 또는 나포면사무소(☎450-6009)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신청지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산145 외3필지

2. 사업의 목적

옥수수재배

3. 사업 신청인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03 유진청하아파트 A-402

신청인(법인명) : 임현숙

주민(법인)등록번호 :

4. 산지전용 면적조서

(단위:M2)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신 청 면 적			제 외 면 적	비 고
				대 지	도 로	계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산145	임	2,281	2,281		2,281	-	
	산146	임	50	50		50	-	
	산147	임	99	99		99	-	
	산148	임	19,231	17,440		17,440	1,791	
계	4 필지		21,661	19,870		19,870	1,791	

5. 사업내용

본 지역은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산145 외 3필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금번 신청지에 옥수수재배를 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지역사회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6. 사업장내의 토사처리계획

사업 승인을 득한후 부지 조성공사 시행시, 절·성토 작업으로 인한 사토는 현장 부지내에 처리할 계획임.

7. 공사중 피해방지계획

공사중 교통소통 및 비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인근주민 및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겠음.

(공사중 피해방지사항 및 방지대책 별첨)

8.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

- 1) 본인 직영으로 운영계획
- 2) 준공 후 사업자가 시설유지 및 보수관리예정

9. 공 사 규 모

1) 토목 공사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부 지 조 성	토공사	흙 깎 기			1,921.00		m ²				
		흙 쌓 기			1,436.00		m ²				
		벌개제근			20,495.00		m ²				
		면고르기			16,455.00		m ²				
		작업로			230.00		M				
	배수공	토사배수로		W=1.5m		434.00		M			
		침사지설치		3.0*2.5		3.00		개소			
		PE관		D800mm		24.00		M			

2) 주변경관 조성공사

- 1)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공사및 배수시설 및 자연배수 시공
- 2) 완만한 경사시공 및 비탈면에 구조물 및 비탈보호 시공

11. 급수 및 배수, 오수처리시설

- 1) 해당사항없음.
- 2) 부지내 토사배수로 및 PE관 설치 후 기존수로에 연결 배수함.
- 3) 해당사항없음.

12. 공사 예상금액

대지조성 공사비 : 62,200,000 원
계 : 62,200,000 원

13. 자금 조달계획

자금 조달 (원인자 100% 부담)

본인 부담금 : 62,200,000 원
은행 융자금 : 원
계 : 62,200,000 원

14. 사업 기간

공사 착공 : 2010 년 11 월 일
공사 준공 : 2012 년 10 월 일

영농계획서

1. 목적

본 개간지는 주변여건이 거의 농지(경지정리 및 전, 답등)로써 그동안 임야로써 수종이 경제성이 전혀 없는 소나무류와 잡목등으로 이루어진 환경사지역으로써,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농가 소득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계절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옥수수를 재배함으로써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케 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농민으로써 이윤을 얻어 가정경제부흥은 물론 지역경제에 기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면적

(단위 : m²)

개간면적	감보면적	실경작면적	비고
19,870	-	19,870	

3. 생산농작물

(단위 : m²)

생산면적	농작물별면적	비고
	옥수수재배	
19,870	19,870	

4. 연가별 경작계획

년 재배 작물	2011년						2012년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옥수수 재배														

5. 영농방법

현재 우리 나라의 영농방법은 기계화와 과학화 로 산업이 발달된 나라로써 본 개간지는 현재의 지형상태나 위치 일조권을 감안하고 주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영농방법을 기계화하여 고도의 영농방법을 동원하여 인력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다한 농약사용 등으로 농작물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본 개간지는 우리 고유의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여 신선하고 건강에 유익한 생산지가 되도록 하고자 함.

6. 수지예산계획(본 계획은 생산 불가 변동에 의거 변할 수 있음)

ㄱ. 현재임야로서의 경제 가지는 전혀 없음

ㄴ. 수익계산

재배작물	금액	수입계산		
	면적(m ²)	단가(원)	금액(원)	비고
옥수수재배	19,870	2,500	49,675,000	
합계	19,870		49,675,000	

ㄷ. 영농경비계산

재배작물	금액	지출계산		
	면적(m ²)	단가(원)	금액(원)	비고
지출비	19,870	1,000	19,870,000	
합계	19,870		19,870,000	

ㄹ. 연간 순수계산

내 력 년 별	수입금액	지출경비	순수익계	순수익률	비 고
4년	49,675,000	19,870,000	29,805,000	60%	
합계	49,675,000	19,870,000	29,805,000	60%	

7. 결과

상위와 같은 영농계획에 의거 하여 개간 목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의 임야상태 보다는 토지 생산성이

수배에 이르므로 생산적 국토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

토 지 조 서

토지의 소유자		토지의 표시						개간대상 면적	기타
성명	주소	시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안성만	익산시 동산동 1058 비사벌아파트 103-201	군산	나포	장상	산145	임	2,281	2,281	
임현숙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03 유 진청하아파트 A-402				산146	임	50	50	
임현숙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03 유 진청하아파트 A-402				산147	임	99	99	
최민숙	익산시 동산동 1058 비사벌아파트 103-201				산148	임	19,231	17,440	
임현숙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03 유 진청하아파트 A-402								

군산시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10-40호

2010년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실시 공고

우수한 생태환경을 위해 철새들의 먹이 및 휴식공간(쉼터)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생태계 보전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합니다.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이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이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 및 사업시행지침(환경부)

□ 대상지역 :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 일원 430ha

□ 사업유형

- 경 작 관 리 계 약 : 보리경작
- 보호활동 관리계약 : 벼짚준치
- 보호활동 관리계약 : 무논조성(금강제방 1km이내 농지, 저지대농지에 한함)

□ 사업참여 신청

- 신청기간 : 2010. 10. 12 ~ 2010. 10. 25
- 신청장소 : 군산시 철새생태관리과(철새조망대) 또는 나포면사무소
- 신청대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자
- 신청방법 : 청약서에 의한 신청 (청약서 비치 : 나포면사무소 및 철새조망대)
- 구비서류 : 쌀소득등보전직불제등록증, 주민등록등본(보리경작에 한함)

□ 계약체결

- 체결방법 : 추진협의회 협의 조정 후 대상지역 주민과 계약 체결
- 사업추진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년 4월말까지

□ 문 의 처 : 철새생태관리과(☎453-7213, 7214)

2010년 10월 일

군 산 시 장